2024년 개정판

충청남도교육청 고시 제2024-6호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2024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 지침

충청남도교육청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 목 차

제1장 총칙

Ⅰ. 목적 ····· 3

Ⅱ. 관계 법령 ····· 3

Ⅲ. 방침 ····· 5

Ⅳ. 용어의 정의 ····· 8

Ⅴ. 전·편입학 허용 범위(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 ····· 11
1. 전·편입학 정원 외 허용 범위 ····· 11
2.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12

제2장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Ⅰ. 기본 방침 ····· 19

Ⅱ. 전·편입학 적용 대상 ····· 20
1. 재학생 ····· 20
2. 자퇴생 및 퇴학생 ····· 21
3. 귀국학생 ····· 22
4.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 22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대상자 ····· 23
6. 사회적 배려 대상자 ····· 23
7. 체육특기자 ····· 23

Ⅲ. 제출 서류 ····· 24

Ⅳ. 전입학 배정 ····· 29
1. 배정 원칙 ····· 29
2. 배정 절차 ····· 30
Ⅴ. 행정 사항 ····· 31
Ⅵ. 부칙 ····· 31
Ⅶ.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입학전 배정 ····· 32

제3장 학교장전형 고등학교

Ⅰ. 기본 방침 ····· 39
Ⅱ. 적용 대상 ····· 39
Ⅲ. 전·편입학 업무 준수 사항 ····· 40
Ⅳ. 전·편입학 및 재입학 처리 ····· 41
1. 재학생의 전학 ····· 41
2. 자퇴생 및 퇴학생 ····· 41
3. 귀국학생 ····· 42
4.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 43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대상자 ····· 43
6. 사회적 배려 대상자 ····· 43
7. 체육특기자 ····· 44
Ⅴ. 제출 서류 ····· 45
Ⅵ. 행정 사항 ····· 49
Ⅶ.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입학전 전학 ····· 50
◈ 전·편입학 관련 자주하는 질문(Q&A) ····· 52

Contents / 목 차

부록

부록1. [관련 양식] ····· 57
양식 1.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 신청서 ····· 57
양식 2. 입학·편입학 신청서(교육감 전형 외국인 학생용) ····· 58
양식 3. 전입학 신청서 ····· 59
양식 4. 편입학 신청서 ····· 60
양식 5.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 61
양식 6.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 ····· 62
양식 7. 교육환경전환 대상학생 상담일지 ····· 63
양식 8. 재입학 신청서 ····· 64
양식 9.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 65
양식 10. 친권자 전학동의서 ····· 66
양식 11. 학부모 전학동의서(체육특기자용) ····· 67
양식 12. 학교장 전학동의서(체육특기자용) ····· 68
양식 13. 입주확인 각서 ····· 69
양식 14.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전입자 전학 신청서(학교장전형) ··· 70
양식 15. 입학포기원 ····· 71
양식 16. 학교장추천서 ····· 72
양식 17. 거주지확인서 ····· 73
양식 18. 교육과정안내확인서 ····· 74

부록2. [귀국학생 편입(재취)학] ····· 77
참고 1. 상담사례 Q&A ····· 98
참고 2.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 103
참고 3.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 105
참고 4. 아포스티유협약에 따른 해외 이주 및 귀국학생 전·편입학 ····· 108
참고 5. 한국학교 현황 ····· 111
참고 6. 학력인정 대안학교 현황 ····· 113
참고 7. 북한이탈학생 취학 및 편입학 ····· 115
참고 8. 외국국적학생 학적 관리 요령 ····· 116

부록3.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 127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 칙

Ⅰ 목 적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충청남도 내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이하 '전·편입학'이라고 함)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Ⅱ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 ▪제47조 (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제28조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 ▪제29조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 ▪제51조 (학급수·학생수)
-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고등학교도 준용
- ▪제67조 (중학교 입학 시기 등) - 고등학교도 준용
- ▪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 - 중학교 - 89조⑤에 의해 ⑥항은 고등학교 준용
- ▪제74조 (편입학) - 고등학교도 준용
-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제76조의3 (고등학교의 구분)
- ▪제82조 (입학전형방법)
-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 ▪제89조의2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제92조 (준용)
-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의2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제98조의3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제98조의4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제10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1조 (전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력 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3조 (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신고의무 등)
▪제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아동의 취학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아동의 취학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3(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15조 (유학의 특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6조의2 (전학·입학 편의제공)
❍**민법**
▪제909조 (친권자)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9조 (학력의 인정)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원)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전·입학 편의 제공)

Ⅲ 방 침

가.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1]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하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나. '교육감전형 고등학교'라 함은 천안시·아산시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로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다. '학교장전형 고등학교'라 함은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고등학교를 말한다.

라.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가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 따른 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하여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4)

마.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바. 전 가족[2]의 **거주지** 이전(타 시·군 또는 타 시·도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 후, 제출 서류를 완비하여 동일계열로 전입학을 신청하거나 동일계열 학교가 해당 지역에 없는 경우, 학교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해야 하며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 재적교의 결석 등 생활지도상 이유로 불허할 수 없다.

사. 동일 시·군 내의 모든 학교에 정원 내 결원이 없어 전입학이 불가능한 경우, 정원 내 대상자를 정원 외로 허용할 수 있다.(해당 학생은 정원 내 결원이 생기면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함) 또한 정원 외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정원 외 대상자를 정원내로 허용할 수 있다.(해당 학생은 정원 외 결원이 생기면 정원 외로 전환 관리함)

---

1) 해당 학년 전·편입학 이전의 출석일수와 이후 출석해야 할 일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이어야 전·편입학 허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이상으로 한다) **※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해당학년 수료(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부,모와 전학당사자인 자녀를 말함

아. 전·편입학은 동일계열의 경우 3학년 1학기 말까지, 계열이 달라지는 경우 2학년 1학기 말까지 허용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계열과 시기와 상관없이 전입학이 가능하다.

1) 체육특기자가 해당종목이 해체되어 타학교 동일종목 체육특기자로 전입학하는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3)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중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등)

자. 2024학년도 충청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기준

❍ 해당 학년 전·편입학 이전의 출석일수와 이후 출석해야 할 일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이어야 전·편입학 허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이상으로 한다)

※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해당학년 수료(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타 시·도 및 계열을 달리하는 전·편·재입학 허가 시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전·편·재입학을 원할 경우, 교육과정 미이수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3], 전·편·재입학 허가

거주 사실 판단기준

1. **실거주의 개념** : 전 가족[4]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가.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는 아버지(어머니)이나 어머니(아버지)와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다. 친권자 중 일부가 직업(직장)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2. **가거주(위장 전입)에 대한 판단 기준** :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가. 주민등록이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에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
      ▪ <단, 1의 '다'항 해당자 제외>
   라.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단, 1의 '나'항 해당자 제외>
   마.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3. **'거주지'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생활 근거지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뜻하며 제89조 제2항의 '거주지'라 함은 민법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생활근거지를 말한다.**

3) 양식18번 (교육과정 안내 확인서)참조
4) 5쪽 각주2 참고

Ⅳ 용어의 정의

1. 입학 :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외국인 학생이 1학년으로 신입학 하는 경우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함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함

3. 재학 :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7. 전입학 :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일반적 사유 : 전가족의 거주지 이전
- 특별한 사유 :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8. 학년 결정 입학 : 국내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 또는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함

9. 복학 :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학이 가능

10. 진급 : 해당 학년의 교육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1. 조기진급 : 학칙에 따라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2. 전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13.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4. 휴학 :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휴학을 허가할 때에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휴학생은 정원 내이고 학생신분을 유지함
- 휴학의 사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함

15. 면제[5]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한 질병(법정전염병,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 발육부진) 등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인정**유학의 경우에도 면제의 사유에 해당됨

16.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 관리**할 수 있음)

- 유예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로 미루는 것으로 질병으로 인한 유예, **미인정**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 미인정 유학과 미인가 대안학교로 이동에 따른 **미인정**결석 처리 후 유예 등을 포함
- 면제 또는 취학유예 및 유예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결정
-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취학유예 및 유예 결정
- 학교의 장이 면제 또는 취학유예 및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장(초등학교) 또는 보호자와 교육장(중학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보호자에 대한 통보는 예외로 한다.
-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입학 이후 유예자 또는 수업일수 1/3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5) **면제와 유예는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17. 제적 :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와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면제처리)

18. 자퇴 :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유예 후 정원 외 관리 처리)

▸ 유학의 경우 자퇴 처리함.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자로 인정유학은 면제, 미인정유학은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19. 퇴학 : 징계 등 학칙에 따라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불가)

20. 수료 :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21. 졸업 :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2. 조기졸업 : 학칙에 따른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23. 명예졸업 :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

※ 유학 : 국외유학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Ⅴ 전 · 편입학 허용 범위(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

1. 전·편입학 정원 외 허용 범위

고등학교 전·편입학의 경우, **다음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허용**한다.

대 상 자	정원 외 허용범위[6]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연관법령
재입학 대상자	대상자 전원	제51조 제3호	
편입학 대상자	3%	〃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	5%	제51조 제5호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5%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아동학대·가정(성)폭력·학교폭력피해학생	대상자 전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자 전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귀국학생(특례대상자)	대상자 전원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귀국학생(그 외)	3%	제51조 제5호	
교육지원대상자	3%	제51조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3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3%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제82조
타 시·도 전입자[7]	3%	제51조 제5호	
군인자녀	3%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자 전원	〃	

※ 참고사항

① 학교별 정원 외 총합 비율은 6% 이내로 하되 정원 외 허용범위가 **'대상자 전원'**인 경우, 학교별 정원 외 총합이 6%를 초과하더라도 전·편입학을 허용함

②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기업도시개발특별법』[8]에 해당하는 자녀는 정원에 관계없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편입학을 허가함

③ 군인자녀는 보호자의 근무지역 변경 또는 전가족의 거주지 이전인 경우에도 정원 외로 허용함 단, 군부대 지역 중 **계룡대지역 및 국방대 인근 지역**으로 전·편입학하는 군인(군속) 자녀, 해외 분쟁지역 파견군인(군속) 자녀는 **정원과 관계없이 전·편입학을 허용함**

④ 체육특기생의 경우, 학년 결원이 없을 경우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허용함

⑤ 정원 외 결원이 없는 경우 정원 외 대상자를 정원내로 허용하고, 해당 학생은 정원 외 결원이 생기면 정원 외로 전환 관리함

6) 정원 외 소수점 발생시는 올림하여 산정
7) 충청남도 이외의 시도에서 전입한 학생
8) 2021.3.1. 기업도시 지정지역: 태안

2.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가.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 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나. 입학 대상

1)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특별학급) 등)에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자격 요건 및 허용범위

입학 신청 자격 : 전 가족이 충남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2학년 1학기로 입학 신청⇒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년 이상인 자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외 학습경험이 2학기(1년)이상인 자

※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외 학습경험이 1학기인 자는 2학년 1학기로 입학신청이 불가함

- 2학년 2학기로 입학 신청⇒ 학교외 학습경험이 1학기 이상인자로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1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

◦ 고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2학기(1년)이상인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외 학습경험이 3학기(1년1학기)이상인 자

- 3학년 1학기로 입학 신청⇒ 학교외 학습경험이 1학기 이상인자로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2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

◦ 고1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2학기(1년)이상인 자

◦ 고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3학기(1년1학기)이상인자

- 3학년 2학기로 입학 신청 불가

2)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학원 등 사교육 관련 기관에서 이수한 학습 경험은 제외

※ 1학년 3학기 또는 4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학습기간은 1년 단위의 3학기 또는 4학기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3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또는 3학기(4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과정까지만 이수한 경우는 1학기 과정만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3) '학교 외 학습 경험'의 1학기 과정은 매년 3월초에서 8월말까지 또는 9월초에서 익년 2월말까지의 학습 경험으로 함. (단, 학기기준의 시기는 학력인정기관의 학사일정에 따름)

다.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

1) 입학 신청자가 입학 희망학교로 1학기는 4월 30일, 2학기는 학기 시작 후 20일(휴일 포함)까지 '학년결정 입학신청서'와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을 신청한다. **[양식9]**

※ 입학 신청 희망학교가 학교장전형 고등학교일 경우, 거주지 제한은 본 전입학 처리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일 경우 거주지의 근거리 학교로 입학 신청

2)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는 재학(제적·자퇴)증명서, 이수(수료)증서 및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한다.

4)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는 입학 신청자에게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한다.

5)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학신청자에게(허가하는 경우 허가 학년을 포함하여) 통보하고, 미 통과자에게는 입학 불허를 통보한다.

6)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적은 2학년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다음의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예시)를 참고하되, 일정은 학교별 실정에 맞추어 추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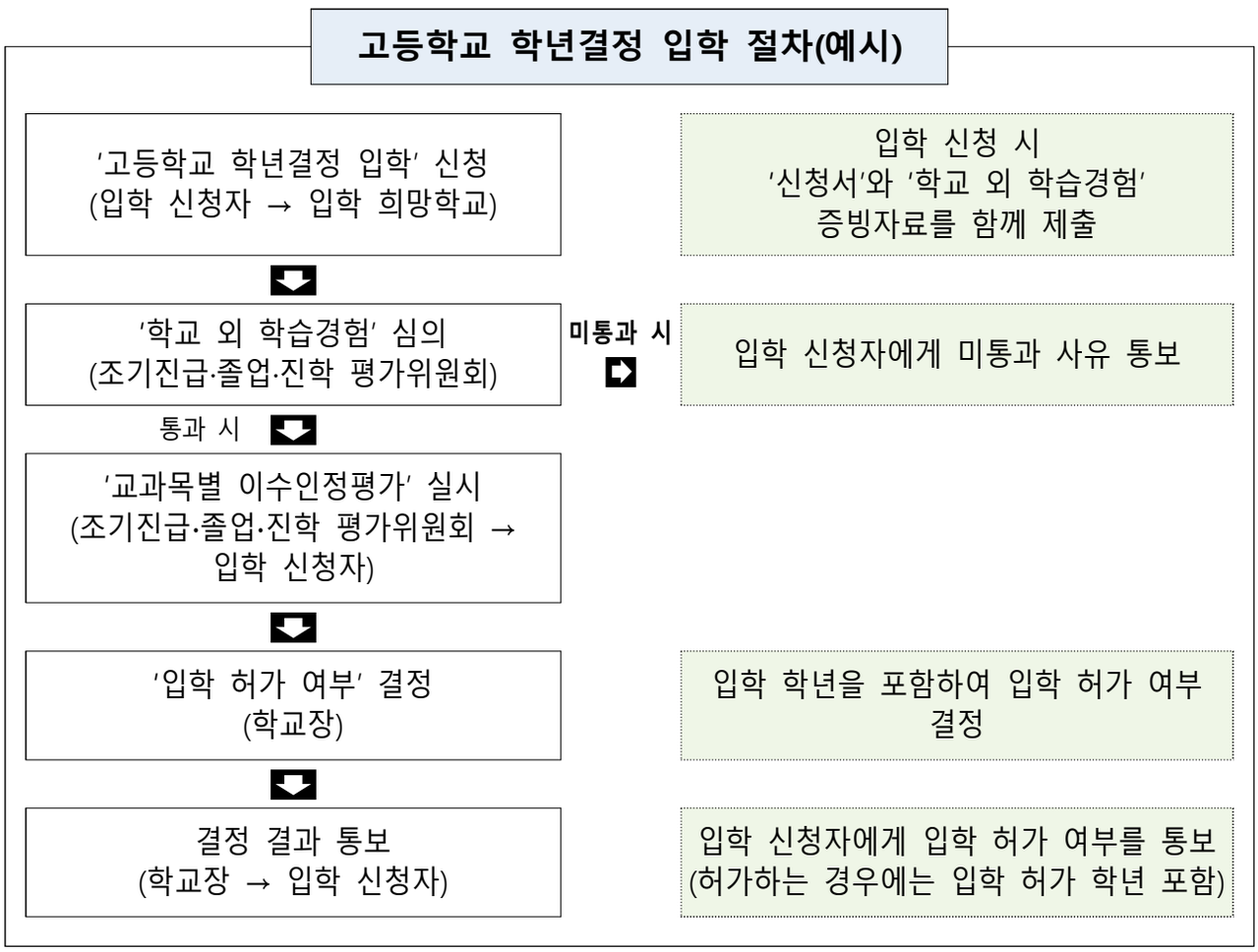

라.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기준

1)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학기 평균 11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 (학기당 11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 가능)

2)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과락 기준 및 불합격 기준을 신청서 접수 이전에 결정하여 학교 누리집 또는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그 외 입학신청 이후 정원 변동 사항 등 학생·학부모가 궁금해 하거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입학 신청자에 대한 사전 안내사항도 학교 누리집에 게재한다.

심의 기준 근거

❍ **학기 평균 11주**

- ○ 171일(정규학교 연간 최소 수업일수)×2/3(정규학교 학년수료 기준)=114일
  - 171일=주 5일 수업 기준수업일 190일–19일(190일의 10분의 1)
- ○ 114일÷5일(주당 수업일)=22.8주(연간, 학기당 11.4주)

❍ **주 평균 20시수**

- ○ 30시수(고등학교 주당 일반교과 수업시수)×2/3(비정규 교육시설 감안)=20시수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와 관련된 수업일수 기준
  - 매 학년도 190일 이상
  -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와 관련된 수료 기준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마.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과 내용은 해당학교의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예시)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에 대하여 지필평가
   - 학교 상황에 따라 지필평가 과목 변경 및 과목 수 가감 가능
   - 교과에 대한 면접 평가
   -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을 포함하거나 전문교과 과목으로 대체 가능

2) 지필평가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해당학교 정기고사 수준으로 출제한다.

3) 문제지, 답안지 등 심의 및 평가자료(근거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 이상까지 학교에서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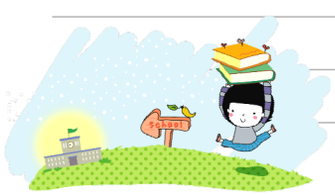

제 2 장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제2장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Ⅰ 기본 방침

1. 교육감전형 고등학교는 학군 내 학교[9] 간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특례 대상자,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체육특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대상자 등은 예외로 한다.
2. 천안지역 내 학교장전형 고등학교에서 천안학군 교육감전형 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서 진로변경으로 인해 동일 지역 내 특성화고와 예술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학교장이 허용할 수 있다.
3. 아산지역 내 학교장전형 고등학교(온양한올고등학교 국제통상외국어과 포함)에서 아산학군 교육감전형 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서 진로변경으로 인해 동일 지역 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로의 전·편입학은 학교장이 허용할 수 있다.
4. 타 시·도 일반고등학교에 합격한(배정된) 학생이 입학 전 교육감전형 고등학교로 배정을 원할 경우, 별도의 계획[10]에 따라 입학 전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다.
5.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 배정되었거나 재학한 학생, 천안·아산지역 학교장전형 고등학교에 재학한 학생이 타 시·도 또는 타 시·군 고등학교로 전학하였다가 전출 전 지역으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원적교[11]에 배정**한다.
6.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 배정되었거나 재학한 후, 유학을 다녀온 학생은 원적교에 편입학을 신청한다.
7. 외국인학생 편입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배정한다.

9) **교육감전형 천안학군은** 천안시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로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13교(천안중앙고, 천안여고, 천안두정고, 천안월봉고, 천안쌍용고, 천안신당고, 천안오성고, 천안업성고, 천안청수고, 천안불당고, 천안고, 복자여고, 북일여고)를 의미하고, **교육감전형 아산학군**은 아산시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로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8교(온양고, 온양여고, 온양용화고, 설화고, 배방고, 아산고, 온양한올고, 이순신고)를 의미함

10) ○○○○학년도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 중 충청남도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전입학생 배정 계획(교육혁신과) 등

11) 단, 계열변경의 경우 변경된 계열을 인정 할 수 있음

Ⅱ 전·편입학 적용 대상

1. 재학생

가. **천안시·아산시 중학교 졸업자**가 타 시·도 및 타 시·군(천안·아산 이외) 소재 일반고등학교[12]에 입학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전 가족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교육감전형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할 수 있다.

나. 충청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가 아닌 타 시·도 소재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전가족의 거주지 이전으로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정원 외로 배정한다. **단, 타 시·도 거주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정원 내로 배정**한다.

다. 천안시·아산시 중학교 졸업자가 아닌 **충청남도 내 타 시·군 소재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전가족의 거주지 이전으로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학군 내 고등학교의 **정원 내로 배정**한다.(**천안, 아산 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입학은 정원내로 배정한다**.)

라.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영재고, 자율형 사립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으로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재학 중인 학교장이 허가하고 타 시·도 및 타 시·군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거주지 학군 내 고등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

마. 타 시·군에 소재한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예술·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으로**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1학기까지** 거주지 학군 내 고등학교에 **정원 내로 배정한다. (단, 교육감전형지역 이외의 학교장전형 고등학교에서 아산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으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전입 시기와 상관 없음)**

바. 타 시·도에 소재한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예술·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으로**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2학년 1학기까지** 거주지 학군 내 고등학교에 **정원 내로 배정한다. (단, 아산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전입 시기와 상관 없음)**

12) 일반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에서 지칭한 일반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칭함

2. 자퇴생 및 퇴학생(해당학교에 정원 외로 신청)

가. 재입학

1)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서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이하 '원적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1학기 말까지 허용 가능

2) 절차

학부모(학생)	⇨	원적교 학교장	⇨	원적교
재입학 신청서 원적교에 제출		심의 후 허가여부 결정		재입학 수속

나. 편입학

1)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원적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재학당시 학년)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2) 절차

학부모(학생)	⇨	학교장	⇨	학교
편입학 신청서 원적교 또는 희망교에 제출		심의 후 허가여부 결정		편입학 수속

가) 귀국학생 : [부록2] '귀국학생 편입(재취)학' 업무처리 절차에 따름

나)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대상 학생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에 따름

3) 귀국학생은 원적교로의 편입학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전형 일반고등학교 및 타 계열 고등학교를 원적교로 하는 일반 귀국학생이 교육감전형 고등학교로 편입학을 원할 경우 거주지 학군 내 희망학교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음

- ❍ 자퇴·퇴학자는 원적교에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천안·아산 이외의 지역에서 교육감전형으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원적교에 재입학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학군 내 고등학교로 편입학 할 수 있음
- ❍ 원적교가 아닌 타 학교로의 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퇴학한 학년도와 동일 학년도에는 편입학이 불가함

3. 귀국학생(해당학교에 정원 외로 신청)

가. 대상자 : 외국에서 수학하다가 귀국하여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 편입을 희망하는 자**

1) 특례 대상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1호,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가)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다)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라)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복수 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2) 귀국학생 : 특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귀국학생

나. 절차 : [부록2] '귀국학생 편입(재취)학'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학교장이 편입학 허용

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2] '귀국학생 편입(재취)학' 업무처리 절차 참조

4.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정원 외 배정)

가. 학교폭력 피해를 받아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입학을 추천 및 요청한 자

나.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 및 요청한 자(개인정보 비밀 유지에 유의)

다. 심각한 질병(지체부자유자,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및 부상 등으로 인해 통학상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이 전입학을 요청한 자

라.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단, 통학거리 및 진로변경을 사유로 하는 교육환경 전환은 불가함)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대상자(정원 외 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배정한다.(「학교폭력가해학생배정지침」에 의함)

6. 사회적 배려 대상자(정원 외 배정)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지의 근거리 고등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가.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입증자료 : 장애인증명서)

나. 암·희귀·난치병 관련 환자(입증자료 :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임을 명시한 진단서)

다. 소년·소녀 가장(가정위탁, 시설입소)(입증자료 : 소년·소녀가장 확인 증빙 서류)

라. 장애부모의 자녀(입증자료 : 부모의 장애인증명서[13])

7. 체육특기자(정원 내 배정)

가. 체육특기자[14] 전입학 : 당해 학교 지정 종목의 결원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배정하고, 같은 종목에서 경합이 될 때에는 실적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나. 절차

전출교/전입교/학부모	➡	전출교	➡	관련부서
전학 동의서 작성		동의서 취합후 관련부서로 서류 제출		교육과정과로 선배정 요청 공문 제출

다. 일반학생 전환자 전입학

1) 대상자 : 팀 해체,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신체질환 등으로 체육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여 일반학생 자격으로 원적교에 재학하거나, 타 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 체육특기자를 일반학생으로 전환할 경우 원적교 재학을 원칙으로 함

2) 전환 절차 : 일반학생 전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별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환 결정

- 원적교 : 원적교에 일반학생으로 전환하여 재학하거나 거주지 고등학교로 전출 허용
- 배 정 : 체육특기자가 일반학생으로 전환되어 전가족이 거주하는 교육감전형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내로 배정

13)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종합장애 정도]란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표기)확인
14)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

Ⅲ 제출 서류

1. 재학생의 전입학

가.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 신청서 1부[양식1]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다. 주민등록등본(거주지 변동내역 포함) 1부

1) 부·모·자를 포함한 전 가족 등재, 단독(독립)세대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미인정

2) 신청인의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www.share.go.kr)을 통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 전가족 세대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서류

부(父) 또는 모(母)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분		확인 서류
1.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부모가 사망한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	▪ (학생) 제적등본 1부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친권자의 전학동의서(자필, 전학위임내용 포함) **[양식10]** 각 1부
5.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등학교 입학 신청서 접수 이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고등학교 입학 신청서 접수 이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학교장 추천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양식16]**

6.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행복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과 현재 계약서 사본 1부(원본지참확인)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선고 된 자의 확인서 1부(법원 발행) ▪ 그 외 전 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등 각 1부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직계존속, 성인인 형제자매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학생) 주민등록등본 1부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 직계존속과 세대 구성할 시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필 사유서 1부
9.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학교장 추천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양식16]**
※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거주지 확인서 **[양식17]** 등	

3)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달라서 입주하는 지역의 학교에 미리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용)

① 주민등록등본 대신 이전 예정 관련 서류(예 : 아파트 입주계약서)로 확인

② '입주확인각서' [양식13] 작성

③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담당자 및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라. 기타서류

1) 군인자녀

- 해당 부(父) 또는 모(母)의 재직증명서 1부

2) 충청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혁신도시 내 이전 기관 포함) 및 산업체(혁신도시 내 이전 산업체 포함) 직원, 혁신도시 내의 건설 관련 직원 자녀

- 해당 부(父) 또는 모(母)의 재직증명서 1부

3)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수몰지구대상자, 사회적배려대상자, 귀국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 중 일반학생 전환자,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자

- 각 해당되는 세부 자료 첨부

2. 자퇴생과 퇴학생

가. 재입학

1) 재입학 신청서 1부 **[양식8]**

나. 편입학

1) 편입학 신청서 1부 **[양식4]**

2)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변동내용 포함)

(가) 부·모·자를 포함한 전 가족 등재, 단독(독립)세대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미인정

(나) 신청인의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www.share.go.kr)을 통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 전가족 세대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 제출(24쪽 준용)

3)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3.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학교장 추천자)

가. 공통 제출서류

- 학교장 추천서 1부 **[양식6]** :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함

나.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공문 사본 1부

(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양식7]**

(다) 학부모 사유서 1부 **[양식5]**

(라) 기타 피해 입증 증빙 서류

2)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 : 아래 서류 중 하나

(가) 보호시설(피신처) 입소 확인서

(나) 가정폭력상담소 발행 상담사실 확인서 1부

3) 성폭력 피해학생 : 아래 서류 중 하나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부

(나)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 진단서 1부

(다) 수사기관에 성폭력 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 아동학대·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의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의 전학을 지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구성원임을 확인

4) 심각한 질병 서류

(가)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종합병원) 의사진단서 1부

(나) 담임 의견서 1부

(다) 학부모 사유서 1부 **[양식5]**

(라) 3회 이상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등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양식7]**

(마)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4. 수몰지구대상자

-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혹은 수몰지구 이주자 증명서 1부

5.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부

나. 암·희귀·난치병 관련 환자: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임을 명시한 진단서 1부

다. 소년·소녀 가장(가정위탁, 시설입소): 소년·소녀 가장 확인 증빙 서류 1부

라. 장애부모의 자녀: 부모의 장애인증명서[15] 1부

6. 귀국학생

◔ [부록2] '귀국학생 편입(재취)학' 업무처리 절차 참조

7. 북한이탈주민 자녀

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해당 기관장 확인)

나. 학력확인서 1부(해당 기관장 확인)

8. 체육특기자

가. 전출·입교 학교장 전학 동의서 각 1부 **[양식12]**

나. 학부모의 전학 동의서 1부 **[양식11]**

다.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부서 선배정 요청 공문 1부

9. 체육특기자 중 일반학생 전환자

- 일반학생 전환 결과 증빙서류 사본 1부
  (학교별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심의 관련 내부결재 공문)

15)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종합장애 정도]란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표기)확인

10.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자

가.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양식9]** 1부

나.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다.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서류 1부(고등학교 편입학용)

Ⅳ 전입학 배정

1. 배정 원칙

가. 전입학 희망자에 대하여 학년별로 구분하여 배정하되, 접수를 받아 학교별 결원 수만큼 배정한다. 단, 접수일 및 배정일은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편의를 위하여 필요시 수시배정을 할 수 있다.

1) 천안학군의 배정 희망교는 남학생은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여학생은 1지망부터 11지망까지 희망 순위별로 지망한다.

2) 아산학군의 배정 희망교는 남학생은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여학생은 1지망부터 6지망까지 희망 순위별로 지망한다.

3) 제1지망 배정 희망교의 전입학 배정 희망자가 결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희망교에 전원 배정한다.

4) 제1지망 배정 희망교의 전입학 배정 희망자가 결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배정한다.

5) 제1지망에서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제2지망, 제3지망의 순으로 마지막 지망 학교까지 차례로 배정한다.

나. 전입학 희망자는 접수 시 배정 신청서 및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원 외 전입자는 학교별 정원 외 총합 비율은 6% 이내로 하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근거리 배정 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의 법령에 의한 전학은 학교별 정원 외 총합이 6%를 초과하더라도 배정할 수 있다.

2. 배정 절차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평일(09:00~12:00, 13:00~17:00)

나. 신청서 작성 절차

1) 주민등록등본 2부를 발부 받아 1부는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제출하여 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1부는 배정 신청서와 함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담당자에게 제출[16)]

학부모	→	학부모/원적교	→	학부모→교육과정과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배정신청서 작성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배정신청서 학교생활기록부 기타 관련 서류

2) 배정 신청서의 '재학증명' 란은 현재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작성

3)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전입학교를 배정 받은 후 배정 학교에서 전입학 처리

다. 배정 방법

1)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로 직접 접수

2) 담당자가 신청서를 확인한 후 희망교의 순위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순서대로 배정

3) 가급적 민원접수 당일에 배정 처리

라. 등록

1) 기한: 배정일로부터 3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배정교와 협의하여 처리)

2) 유의사항: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는 전입학을 재접수 할 수 없음

16) 등기우편으로 제출가능하나 분실 등 책임은 본인 귀책사유임

Ⅴ 행정 사항

1. 제출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본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배정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배정 및 전입학을 무효로 하고, 이후 교육감전형 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3. 학교 배정을 받은 자는 재배정을 신청할 수 없다.
4. 전입학 관련 서류는 나이스로 전송 처리한다. 학생이 전·편입학할 경우 원적교의 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누가기록 포함)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편입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5.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은 배정된 전입학자의 학적사항 및 실거주 여부 등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적교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 통보한다.
6. 위장전입자 및 가거주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정을 취소하고 원적교로 환원하며, 이후 교육감전형 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전입학 희망자의 전 가족 거주지 이전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함)
7. 전·편입학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단, 학교별 교육과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편입학을 허용할 경우 교과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전·편입학을 허용한다.(교육과정 안내 확인서 **[양식18]** 참조)
8. 전·편입학 관리 사항은 각종 감사 및 장학 시 주요 확인 사항임을 유념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Ⅵ 부칙

이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년에 적용한다.

Ⅶ 교육감 전형 타 시·도 입학 전 배정

1. 목적

타 시·도 일반고등학교[17]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모든 가족이 충청남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천안학군, 아산학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고등학교에 입학과 동시에 전입학 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겪는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

2. 관련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2항
나. 시·도교육청 중등장학담당장학관 회의자료(학교8110-391, 1999.11.22.)

3. 대상

타 시·도에서 1년 이상(2025. 3. 1.기준) 거주하고 해당 시·도에서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배정)한 자로서 지원서 접수일 현재 **천안시 또는 아산시로 모든 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된 자**(단, 부모의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의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근무지 이동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사유가 확인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함)

4. 처리 절차

가. 접수 시기: 2025. 2월초 예정
나. 접수 장소: 천안학군(천안교육지원청), 아산학군(아산교육지원청)

5. 제출서류

① 충청남도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전입학생 배정 지원서 1부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③ 모든 가족(부, 모, 해당 학생)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거주지 변동내역 포함) 1부
- 단독 독립세대 구성
※부 또는 모의 거주지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추가 서류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지원자 기준)

17) 일반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

6. 추첨 배정 방법

가. 타 시·도 전입자 입학 전 배정 가능 인원은 학교별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함(단, 2025학년도 신입생 미배정 인원을 포함하여 배정)

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가정위탁·복지시설 입소 아동,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의 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별 정원 외 총합비율 3%를 초과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음

다. 학교별 배정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배정 지원서에 작성한 배정 희망 고등학교의 지망 순서대로 마지막 지망학교까지 추첨 배정함

라. 학교배정을 위한 추첨은 지원자 또는 보호자가 참여하여 직접 추첨하되, 지원자 전원이 1지망에 배정될 경우는 추첨 없이 배정 통보함

※ 교육감전형 일반고등학교 입학예정자의 입학전 배정은 「**2025학년도 타·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 중 충청남도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전입학생 배정계획(11월초 공고 예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교육청 고입전형 누리집(http://www.cne.go.kr/hischool/main.do) 확인 필요

※ 천안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주 소	설립	남/여	비고
1	천안중앙고등학교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91	공립	남	
2	천안여자고등학교	천안시 동남구 삼룡3길 30	공립	여	
3	천안두정고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2길 13	공립	공학	
4	천안월봉고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51	공립	공학	
5	천안쌍용고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10	공립	공학	
6	천안신당고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2길 36	공립	공학	
7	천안오성고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27	공립	공학	
8	천안업성고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업성3길 65-11	공립	공학	
9	천안청수고등학교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82-46	공립	공학	
10	천안불당고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불당 29길 22	공립	공학	
11	천 안 고 등 학 교	천안시 동남구 봉명로 53	사립	남	
12	복자여자고등학교	천안시 동남구 복자1길 1	사립	여	
13	북일여자고등학교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71	사립	여	

※ 아산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주 소	설립	남/여	비고
1	온 양 고 등 학 교	아산시 온천대로 1411	공립	남	
2	온양여자고등학교	아산시 온여고길 21번길 24	공립	여	
3	온양용화고등학교	아산시 용화고길 10	공립	공학	
4	설 화 고 등 학 교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111	공립	공학	
5	배 방 고 등 학 교	아산시 배방읍 배방산길 359번길 61	공립	공학	
6	이순신고등학교	아산시 배방읍 동방로 132	공립	공학	
7	아 산 고 등 학 교	아산시 번영로 115번길 21	사립	남	
8	온양한올고등학교	아산시 청운로 158	사립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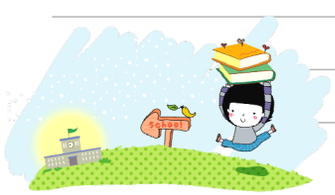

제 3 장 학교장전형 고등학교

제3장 학교장전형 고등학교

Ⅰ 기본 방침

1. 학교장전형 고등학교는 동일 시·군 내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특례 대상자,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체육특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대상자, 진로변경 등은 예외로 한다.
2. 진로변경으로 인한 동일 시·군 내 전·편입학과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타·시도 및 타 시·군 학생의 진로변경 전·편입학은 정원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3. 학교장전형 고등학교에 합격했거나 재학한 학생이 거주지 이전으로 타 시·도 또는 타 시·군 고등학교로 전학하였다가 다시 전가족의 거주지가 전과 동일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원적교[18]로의 전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4. 타 시·도 또는 타 시·군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전 가족 거주지 이전 없이 거주지 소재 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을 불허한다.(교육환경전환대상자는 예외)
5. 고등학교에 합격했거나 재학한 후, 유학을 다녀온 학생은 원적교에 편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지역에 학생이 재학하던 계열의 학교가 없을 경우 인접 지역의 동일계열 학교에서 전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7. 논산, 계룡지역은 행정구역 상, 동일 시·군이 아닌 타 시·군에 해당하므로 두 지역 간의 전입학을 허용한다.

Ⅱ 적용 대상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고등학교

18) 단. 계열변경의 경우 변경된 계열을 인정 할 수 있다.

Ⅲ 전 · 편입학 업무 준수 사항

1. 동일계열 전·편입학 우선 허용

전·편입학 지역에 동일계열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계열 전·편입학을 우선하여 허용한다.

2. 학교 전·편입학 관련 규정 정비 및 누리집 탑재

학교장은 본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학교별 전·편입학 대상자 심의 계획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고, 학교 누리집에 탑재한다.

3. 학생정원 및 현원 현황 공개

학교 '학생정원 및 현원 현황'을 학년별·계열별·전공별로 별도 작성하여 교무실에 비치하고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한다.

4. 전 · 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비치

가. 학교에서는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전·편입학 해당 법규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그 순위를 확인시킨다.

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원적교의 결석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를 이유로 접수를 불허할 수 없다.

5. 전·편입학 심의

전·편입학 심의는 접수 순으로 하며, 특수목적고, 특성화고에 한하여 적성검사, 체력검사 등 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6. 특수목적고등학교[19], 자율형 사립고, 충남다사랑학교, 풀무농업기술학교, 드림학교의 전·편입학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전·편입학 가능 여부를 학교규칙에 명시하고, 전·편입학이 가능한 학교는 학교규칙과 대상자 선정 계획을 학교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편입학 대상자 선정 계획 포함 내용 예시

가. 전·편입학 가능 시기(○학년 ○학기까지)
나. 학년별·학과별 선정 인원
다.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마. 전형에 관한 사항
바. 합격자 발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등

19) 과학·외국어·예술·체육 계열, 산업수요맞춤형고

Ⅳ 전·편입학 및 재입학 처리

1. 재학생의 전학(해당 학교에 정원 내로 신청)

학부모 준비	전입 희망교	재적 학교장	전입학교
○ 재적학교의 전학용 재학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주민등록등본	서류 지참 후 전입학 신청→전입학동의	전학 허락 및 전출 수속	전입학 수속

2. 자퇴생 및 퇴학생(해당 학교에 정원 외로 신청)

가. 재입학

1)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이하 '원적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1학기 말까지 허용 가능

2) 절차

학부모(학생)	원적교 학교장	원적교
재입학 신청서 원적교에 제출	심의 후 허가여부 결정	재입학 수속

나. 편입학

1)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원적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 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재학당시 학년)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2) 절차

학부모(학생)	학교장	학교
편입학 신청서 원적교 또는 희망교에 제출	심의 후 허가여부 결정	편입학 수속

가) 귀국학생 : [부록2] '귀국학생 편입(재취)학' 업무처리 절차에 따름

나)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대상 학생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에 따름

3) 귀국학생은 원적교로의 편입학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전형 일반고등학교 및 타 계열 고등학교를 원적교로 하는 귀국학생이 교육감전형 고등학교로 편입학을 원할 경우, 거주지 학군 내 희망학교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음

- ❍ 자퇴·퇴학자는 원적교에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원적교가 아닌 타 학교로의 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퇴학한 학년도와 동일 학년도에는 편입학이 불가함
- ❍ 야간부 고등학교 휴학자, 자퇴자, 중도 탈락자 중 야간부 고등학교 폐교로 재입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계열 주간부 고등학교에 정원 외로 전·편입학을 할 수 있음

※ 전입학, 편입학 및 복학의 경우 중복자료 삭제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1쪽 참고

3. 귀국학생(해당 학교에 정원 외로 신청)

학부모		학교장		학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편입학 신청	⇨	심사 및 학년결정	⇨	편입학 수속

가. 대상자 : 외국에서 수학하다가 귀국하여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장전형 고등학교로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1) 특례대상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1호,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가)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다)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라)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복수 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2) 귀국학생(그 외) : 특례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귀국자로 원적교로의 편입학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전형 고등학교로 편입학을 원할 경우, 편입학 희망학교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음

나. 절　차 : [부록2] '귀국학생 편입(재취)학' 업무처리 절차 및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2] '귀국학생 편입(재취)학' 업무처리 절차 참조

4.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정원 외)

가. 학교폭력 피해를 받아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입학을 추천 및 요청한 자

나.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 및 요청한 자(개인정보 비밀 유지에 유의)

다. 심각한 질병(지체부자유자,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및 부상 등으로 인해 통학상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이 전입학을 요청한 자

라.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단, 통학거리 및 진로변경을 사유로 하는 교육환경 전환은 불가함)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대상자(정원 외 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배정한다. (「학교폭력가해학생배정지침」에 의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에 한함

6. 사회적 배려 대상자(정원 외 배정)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지의 근거리 고등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가.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입증자료: 장애인증명서)

나. 암·희귀난치병 관련 환자(입증자료: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임을 명시한 진단서)

다. 소년·소녀 가장(가정위탁, 시설입소)(입증자료: 소년·소녀가장 확인 증빙 서류)

라. 장애부모의 자녀(입증자료: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7. 체육특기자(정원 내 배정)

가. 체육특기자[20] 전입학 : 당해 학교 지정 종목의 결원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원내로 허용하고, 같은 종목에서 경합이 될 때에는 실적 순위에 따라 허용한다.

나. 일반학생 전환자 전입학

1) 대상자 : 팀 해체,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신체질환 등으로 체육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여 타 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 체육특기자를 일반학생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학교 재학을 원칙으로 함

2) 전환 절차 : 일반학생 전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별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환 결정

- 재학교 : 현재 학교에 재학하거나 거주지 시·군 고등학교로 전출 허용
- 전입교 : 전가족이 거주하는 학교장전형 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로 정원 내 허용(단, 재학학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교육환경전환 추천을 통해 교육감이 배정)

20)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

Ⅴ 제출 서류

1. 재학생의 전입학

가. 고등학교 전입학 신청서 1부**[양식3]**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다. 주민등록등본 (거주지변동내역 포함) 1부

1) 부·모·자를 포함한 전 가족 등재, 단독(독립)세대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미인정

2) 신청인의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www.share.go.kr)을 통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 전가족 세대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서류

부(父) 또는 모(母)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분		확인 서류
1.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부모가 사망한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	▪ (학생) 제적등본 1부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친권자의 전학동의서(자필, 전학위임내용 포함) **[양식10]** 각 1부
5.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등학교 입학 신청서 접수 이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고등학교 입학 신청서 접수 이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학교장 추천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양식16]**

6.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행복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과 현재 계약서 사본 1부(원본지참확인)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선고 된 자의 확인서 1부(법원 발행) ▪ 그 외 전 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등 각 1부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직계존속, 성인인 형제자매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학생) 주민등록등본 1부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 직계존속과 세대 구성할 시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필 사유서 1부
9.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학교장 추천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양식16]**
※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거주지 확인서 **[양식17]** 등	

3)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달라서 입주하는 지역의 학교에 미리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용)

① 주민등록등본 대신 이전 예정 관련 서류(예 : 아파트 입주계약서)로 확인

② '입주확인각서'**[양식13]** 작성

③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담당자 및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라. 기타서류

1) 군인자녀

- 해당 부(父) 또는 모(母)의 재직증명서 1부

2) 충청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혁신도시 내 이전 기관 포함) 및 산업체(혁신도시 내 이전 산업체 포함) 직원, 혁신도시 내의 건설 관련 직원 자녀

- 해당 부(父) 또는 모(母)의 재직증명서 1부

3)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수몰지구 대상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귀국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 중 일반학생 전환자,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자

- 각 해당되는 세부 자료 첨부

2. 자퇴생 및 퇴학생

가. 재입학

- 재입학 신청서 1부**[양식8]**

나. 편입학

1) 편입학 신청서 1부**[양식4]**

2)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변동내용 포함)

(가) 부·모·자를 포함한 전 가족 등재, 단독(독립)세대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미인정

(나) 신청인의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www.share.go.kr)을 통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 전가족 세대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 제출

3)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3.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학교장 추천자)

가. 공통 제출서류

- 학교장 추천서 1부 **[양식6]** :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함

나.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공문 사본 1부

(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양식7]**

(다) 학부모 사유서 1부 **[양식5]**

(라) 기타 피해 입증 증빙 서류

2)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 : 아래 서류 중 하나

(가) 보호시설(피신처) 입소 확인서

(나) 가정폭력상담소 발행 상담사실 확인서 1부

3) 성폭력 피해학생 : 아래 서류 중 하나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부

(나)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 진단서 1부

(다) 수사기관에 성폭력 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 아동학대·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의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의 전학 등을 지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구성원임을 확인

4) 심각한 질병 서류

(가)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종합병원) 의사진단서 1부

(나) 담임 의견서 1부

(다) 학부모 사유서 1부**[양식5]**

(라) 3회 이상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등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양식7]**

(마)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4. 수몰지구대상자

-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혹은 수몰지구 이주자 증명서 1부

5.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나. 암·희귀·난치병 관련 환자 :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임을 명시한 진단서 1부

다. 소년·소녀 가장(가정위탁, 시설입소) : 소년·소녀 가장 확인 증빙 서류 1부

라. 장애부모의 자녀 :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1부

6. 귀국학생

◔ [부록2] '귀국학생 편입(재취)학' 업무처리 절차 참조

7. 북한이탈주민 자녀

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해당 기관장 확인)

나. 학력확인서 1부(해당 기관장 확인)

8. 체육특기자

- 전출·입교 학교장 전학 동의서 각 1부**[양식12]**

9. 체육특기자 중 일반학생 전환자

- 일반학생 전환 결과 증빙서류 사본 1부
  (학교별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심의 관련 내부결재 공문)

10.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자

가.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1부**[양식9]**

나.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다.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서류 1부(고등학교 편입학용)

Ⅵ 행정 사항

1. 제출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본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전·편입학을 취소하거나 학칙에 따라 결정한다.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전입학을 무효로 하거나 학칙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동일 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3. 전·편입학 관련 서류는 나이스로 전송처리 한다. 학생이 전·편입학할 경우 원적교의 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누가기록 포함)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편입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4. 학교장은 전입학 신청자의 실거주 여부 등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위장 전입자 및 가거주자는 원적교로 통보하고 전입학을 무효로 하거나 학칙에 따라 결정한다. (전입학 희망자의 전가족 거주지 이전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함)
5. 전·편입학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단, 학교별 교육과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편입학을 허용할 경우, 교과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전·편입학을 허용한다.(교육과정 안내 확인서[양식18번] 참조)
6. 전·편입학 관리 사항은 각종 감사 및 장학 시 주요 확인 사항임을 유념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Ⅶ 타 시·도 입학전 전학

1. 목적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 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남도내로 이전되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자의 제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

2. 근거

가. 시·도교육청 중등장학담당장학관 회의자료(교육인적자원부 학교81110-391, 1999.11.22)

나. 충청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3.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정원 외 배정)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중, 출신 중학교 소재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남도내로 이전된 자

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출신 중학교 소재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남도내로 이전된 자

※ '전 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남도내로 이전된 자'라 함은 충청남도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등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를 뜻함

※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함

4. 처리 시기 및 장소

가. 접수 시기 : 전입 희망 학교장이 정함

※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로 입학 전 충청남도 내 고등학교로 입학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고등학교와 상담 필요(교육감전형 고등학교 제외)**

나. 접수장소 : 전 가족이 이전한 거주지 소재 시·군 고등학교 중 **전입 희망 고등학교**

5. 제출서류 및 절차

가. 제출서류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중 전입자 전학신청서 1부**[양식14]**

2)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1부

(가) 부·모·자를 포함한 전 가족 등재, 단독(독립)세대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미인정

(나) 신청인의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www.share.go.kr)을 통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 전가족 세대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 제출

나. 처리절차

1) 타 시·도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합격 후 등록(등록금 납부 포함)

2) 충청남도로 거주지 이전 완료

3)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중 전입자 전학신청서' 작성**[양식14]**

- 타 시·도에 등록한 고등학교의 입학 전 전출 상담
- 타 시·도에 등록한 고등학교에서 직인으로 입학전 전입학 동의 확인
- 타 시·도에 등록한 고등학교에서 입학전 전입학 배정 동의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방법 등을 확인(등록금 반환 등 제반사항은 학생 측에서 해결)

4) 타 시·도 출신 중학교의 직인으로 해당지역 고등학교 합격자임을 증명

5)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충남지역의 고등학교에 제출

전·편입학 관련 자주하는 질문(Q&A)

Q_01 전·편입학에서의 전 가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 모, 학생(본인)이 모두 함께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Q_02 전입학, 재입학, 편입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① 전입학은 A학군 내의 고등학교 재학생이 B학군으로 이사를 하는 등의 사유로, B학군 내의 학교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② 재입학은 A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A 고등학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③ 편입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 편입학 :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재학 당시의 학년으로 타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귀국자 편입학 :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 후 학업을 중단하고 국외유학을 다녀온 학생이 재학 당시의 차상급 학년으로 원적교에 입학하거나, 거주지 변동 등으로 원적교로의 편입학이 불가능한 경우 타학교에 차상급 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국내의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 및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학교외 학습경험이 있는 자가 조기진급 졸업평가위원회에서 교과별 이수 인정평가를 통해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입학하는 경우,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전입학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고등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김
▪ 재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함

Q_03 전·편입학 관련 별도의 신청기간이 정해져있나요?

▪ 계열이 같은 경우 : 3학년 1학기 말까지
▪ 계열이 다른 경우 : 2학년 1학기 말까지

① 전입학 : 위 기한 범위 내에서 상시 가능
② 재입학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1학기 말까지 허용
③ 편입학 : 자퇴·퇴학 당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시작 일부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허용

Q_04 올해 고입전형에서 불합격하였고 추가모집에서도 불합격하였습니다. 저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미충원학교로는 입학 가능합니다. 검정고시합격자와 고입전형 미응시자도 입학 가능합니다. 미충원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자격을 확인하고 심의 후 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고입전형에 합격 또는 배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입학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_05 천안, 아산 교육감전형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충남교육청(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교육과정과로 방문 신청, 혹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41-640-7228

Q_06 어떤 경우에 배정이 취소되나요?

가거주, 제출서류 허위의 경우 배정을 취소하며, 이후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 전입학이 불가합니다. 등록 포기의 경우에 배정이 취소되고 당해 학년도에 전입학이 불가합니다.

Q_07 가거주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가거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거주로 판단합니다.

① 주민등록이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③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 (예외 : 친권자 중 1명이 지방근무)
④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 : 부모 사망 등)
⑤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가거주인 경우에는 배정이 취소되고, 이후 교육감전형 고등학교로 전입학이 불가합니다.

Q_08 충남에서 타·시도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전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입하고자 하는 학교의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_09 천안 직산읍에서 천안 청수동으로 전 가족이 이사를 갑니다. 새로 이사가는 주소지 인근의 교육감전형 일반고로 배정을 받고 싶은데, 전학이 가능한가요?

천안시 내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은 불가합니다.

Q_10 거주지 이전으로 타 시·군 및 타 시·도 고등학교로 전학하였다가 전가족의 거주지가 전과 동일 지역으로 다시 이사 오는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원적교로 전입학이 가능합니다.

Q_11 부모님은 보령에 계시고 학생 혼자 천안 친척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학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학생의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 이전을 하여야만 전학이 가능합니다.

Q_12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는 전학이 불가능한가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동일 계열의 학교로 전입학이 시기 제한 없이 가능하며, 체육특기자는 해당 종목이 해체되어 타학교 동일종목 체육특기자로 전입학이 불가피한 경우, 전입학이 시기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또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중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학생 등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불가합니다.

Q_13 친권자 전학동의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는 건가요?

'이혼' 사유로 서류를 제출하는 학생이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가 학생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어머니에게만 친권이 있고, 아버지와 학생 둘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동의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② 아버지에게만 친권이 있고, 아버지와 학생 둘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_14 학교에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처리 절차는?

휴학, 복학 등은 학교의 학칙에 의해 처리합니다.

부 록

부록1 관련 양식

【양식 1】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 신청서

학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접수번호	
							접수일	20 . . .

배정 희망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제6지망
	제7지망	제8지망	제9지망	제10지망	제11지망	

보호자	성 명		전화 번호	집) 휴)
	전주소			
	현주소			

재학 증명

위 지원자는 년 월 일 본교에 입(전)학하여 본교[일반고 주간부·야간부 (과·계열), 특수목적고(과·계열), 특성화고(과·계열), 예·체능고(과·계열), 자율고( ), 학력인정 각종학교] 제( )학년 ( )반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학교주소 :

담 당 자 : ( ) 전화번호 : ( ) -

배 정 희망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배정원서 제출 서명란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주민등록등본,과거의 주소변동 이력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주민등본초본)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이 처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입학 담당자가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전입학 학교 배정이 보류 및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위의 기재한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학생(보호자) : (서명)

위와 같이 거주지가 이전되어 전학하고자 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보 호 자 : (서명)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 위장 전입은 전입학이 취소됩니다.

[양식 2] 입학·편입학 신청서 (교육감 전형 외국인 학생용)

입학·편입학 신청서

지원자(학생)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배정희망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6지망
		7지망		8지망		9지망		10지망		11지망		
	국외학력	국 명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재 학 학 년		재 학 기 간		정규학교 여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 )년		
보호자	성 명					보호자전화						

다음과 같이 귀교에 입학(편입학) 하고자 하니 제( )학년에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위와 같이 입학·편입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호자: (서명)**

【양식 3】

전입학 신청서

소 속	고등학교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여
주 소				
연락처	본 인		학생 e-mail	
	보호자			

위와 같이 귀교에 전입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통 (거주지 변동내역 포함)
2. 재학증명서 1통(전학용)
3.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고등학교장 귀하

---------- 절 ---------- 취---------- 선 ----------

전입학 신청 확인서

소 속	
성 명	
순 위	순위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전 화	교무실 : 행정실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배정원서 제출 서명란 >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주민등록등본,과거의 주소변동 이력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주민등본초본)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이 처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입학 담당자가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전입학 학교 배정이 보류 및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위의 기재한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학생(보호자) : (서명)

위와 같이 본교에 전입학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양식 4】 귀국학생 입·취학(편입학) 신청서

편입학 신청서

성 명			성별	남·여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집전화	
전재적교		자퇴(퇴학) 년월일	년 월 일(학년)	
자퇴 및 퇴학 사유				

위와 같이 귀교에 편입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고등학교장 귀하

---------- 절 ---------- 취---------- 선 ----------

편입학 신청 확인서

소 속	
성 명	
순 위	순위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전 화	교무실 : 행정실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배정원서 제출 서명란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주민등록등본,과거의 주소변동 이력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주민등본초본)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이 처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입학 담당자가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전입학 학교 배정이 보류 및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위의 기재한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학생(보호자) : (서명)

위와 같이 본교에 편입학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양식 5】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 소　　속: (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교육환경 전환 요청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증빙서류 : 1.
2.

20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서명)

(　　) 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6】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

▣ 소　　속:　　고등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환경 전환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20　　년　　월　　일

담임교사 :　　(서명)

위 학생을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고등학교장 [직인]　　(사인)

충청남도교육감 또는 (　　)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7】 학교장이 교육상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교육환경 전환 대상학생 상담일지		
고등학교 학년 반 번 성명:		
일 자	**상담내용**	**상담자**

【양식 8】

재입학 신청서

학생 성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현주소				
자(퇴)학일	년 월 일(학년)		자·퇴학 사 유	
보호자 성명			연락처	(집) (휴)

위와 같이 자퇴·퇴학하였던 바, 제 __ 학년에 다시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보호자 연서로 신청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성명 : (서명)

보호자 성명 : (서명)

( )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9】

<table>
<tr><td colspan="8">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td><td>접수
번호</td><td></td></tr>
<tr><td rowspan="12">지

원

자</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성 별</td><td>남·여</td><td colspan="2">생 년 월 일</td><td colspan="2">. . .</td></tr>
<tr><td>최 종
학 력</td><td colspan="8">( )년 ( )학교 ( )학년 (재학·수료·졸업)
( )년 ( )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td></tr>
<tr><td rowspan="10">학
교

외

학
습
경
험</td><td>구 분</td><td colspan="2">기관(시설)명</td><td colspan="4">재학 기간</td><td>재학 학년</td></tr>
<tr><td rowspan="3">고등학교
학력인정
기 관</td><td colspan="2"></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td><td>( )학년
(재학·수료)</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td><td>( )학년
(재학·수료)</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td><td>( )학년
(재학·수료)</td></tr>
<tr><td rowspan="3">국 내
비 정 규
교육시설</td><td colspan="2"></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td><td>( )학년
(재학·수료)</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td><td>( )학년
(재학·수료)</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td><td>( )학년
(재학·수료)</td></tr>
<tr><td colspan="2">보호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 colspan="2">연락전화</td><td>(집)</td><td>( ) -</td></tr>
<tr><td colspan="6"></td><td>(휴대전화)</td><td>- -</td></tr>
<tr><td colspan="10">상기와 같이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을 신청하오니 제( )학년에 편입학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 ) 학교장 귀하</td></tr>
</table>

【양식 10】 ※ 첨부 : 작성자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친권자 전학동의서

학생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집) 휴대폰)	학생과의 관계	
주 소			
사 유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학생(　　)의 전학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양육권자의 문제에 책임을 지며, 위장전입 등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적교로 돌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친권자(학부모) :　　(서명)

(　　) 학교장 귀하

【양식 11】

학부모 전학동의서(체육특기자용)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학부모 연락처	집) 휴대폰)	학생과의 관계	
주 소			

사 유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 본인의 자녀가 (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것에 동의하며, 추후 본 전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　　(서명)

(　　) 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12】

학교장 전학동의서(체육특기자용)			
학 교 명		학년 반 번호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주 소			
체육특기자 전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 학생의 ( )고등학교로의 전학을 동의하며, 추후에 전학에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 ) 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13】

입 주 확 인 각 서

본인 자녀의 전학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입주 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입주계약서(사본)를 대신 제출하며 전학 후 3개월 이내에 **전가족 모두 이주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만약 위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학교의 어떠한 조치사항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학부모 : (서명)

( ) 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14】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전입자 전학신청서(학교장전형)

지원자	성 명		생년월일		접 수 일	. . .
					접수번호	
보호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예정 사실 증명

위 지원자는 본교 20 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입학 수속(등록)을 마친, 신입생으로 배정된]자로서, 귀 고등학교 지원에 동의함.

2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직인]

학교주소 :
담 당 자 : ( ) 전화번호 : ( ) -

위 지원자는 20 년 월 일 본교 (졸업예정자, 졸업자)로서 20 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입학 수속(등록)을 마친, 신입생으로 배정된 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중학교장**[직인]

학교주소 :
담 당 자 : ( ) 전화번호 : ( ) -

입 학 희망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배정원서 제출 서명란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주민등록등본,과거의 주소변동 이력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주민등본초본)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이 처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입학 담당자가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전입학 학교 배정이 보류 및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위의 기재한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학생(보호자) : (서명)

상기와 같이 거주지가 이전되어 귀 고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 ) 고등학교장 귀하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양식 15】

입학 포기원

지원자	출신중학교		학년 반	학년 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20□□학년도 ( )고등학교로 (배정, 합격) 받았으나 아래 사유로 인하여 입학을 포기하고자 보호자 연서로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 사유	□ 입학 전 타 시·도 전학
	□ 유학 □ 대안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각종학교 진학 □ 진학 포기 □ 기타( ) ※ 입학 전 타 시·도 전학 이외의 입학예정자로 입학을 포기한 자는 당해 학년도 고입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 )고등학교 입학포기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와 보호자에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고등학교장 귀하

*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는 '출신중학교' 란에 '검정고시'로 기재

【양식 16】

학교장 추천서

▣ 소 속 : 고등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학교장 추천 사유

20 년 월 일

담임교사 : (서명)

위 학생을 전학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고등학교장 [직인] (사인)

( ) 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17】

거주지 확인서

▣ 소　　속 :　　고등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거주지 확인 사유

20　　년　　월　　일

담임교사 :　　(서명)

위 학생을 전학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고등학교장 [직인]　　(사인)

(　　) 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18】

교육과정 안내 확인서

▣ 소 속 : 고등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본인은 전입학을 함에 있어서 교육과정 차이에 따른 성적처리, 진학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 전입학 결정에 따른 일체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학 생 : (서명)

( ) 고등학교장 귀하

귀국학생 편입(재취)학

충청남도교육청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부록2 귀국학생 편입[재취]학

Ⅰ 목 적

귀국학생의 편입(재취)학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내의 학교에 원활하게 편입(재취)학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학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Ⅱ 관계 법령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 제51조(학급수·학생수)
  - ▪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 ▪ 제74조(편입학)
  - ▪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 제82조(입학전형방법)
  - ▪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 제92조(준용)
  -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 기준 및 절차)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 중·고등학교 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
- ❍ 충청남도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처리 지침
- ❍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 ❍ 인정유학범위 확대해석(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
- ❍ 중·고 입학 전형 시 미인정 유학생의 출결인정 관련 협조 요청(교육부 학교정책과, 2014.07.14.)
- ❍ 국내 외국교육기관으로 학생이동시 학적처리(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 2010.10.25.)
- ❍ 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
- ❍ 난민법 시행령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및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 2014.08.22.)
- ❍ 외국 초·중·고 졸업 학력인정 범위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485, 2015.02.02.)

Ⅲ 용어의 정의

1. 유학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1.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비연수**"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외국의 연수기관,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6월미만의 기간에 걸쳐 지식·기술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의 교육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외국의 연구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외국의 연수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어학 및 기술·기능에 관한 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자비유학자격)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가. 예·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나.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다.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 및 기능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이 영에 따른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라. 고아, 혼혈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마. 이 영에 따른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바.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받은 사람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2. 특례대상자

가.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1년이상 체류한 자**에 한함)

다.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라.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단, **복수 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기간 미달의 예외

□ 천재지변, 국제 정세 불안 등 **공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 미달인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를 수 있음

○ **국제 정세 또는 경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조기 입국하는 경우는 **학적서류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입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적정 학년에 배정하도록 할 것

○ 이 경우 해당 기간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제8조(결석처리) ②의 1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 처리할 것

단, 부득이한 **조기 입국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긴급 철수 조치에 따라 귀국하였으나 다시 출국할 예정인 경우 국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국내에서 체류하게 될 경우는 소급하여 학적처리를 할 수도 있음

3. 귀국학생(그 외)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 귀국학생이 아닌 경우

4. 유의사항

유학 시에는 귀국학생 편입(재취)학 업무(절차, 유형별 제출서류, 학력 인정 기준 및 학년 배정 등) 절차를 숙지하고 출국하여 귀국 후 편입(재취)학 시 참고하도록 **반드시 안내**

Ⅳ 유학 및 귀국학생 관련 학적처리

1. 일반학생

가. 유학 시 학적 처리 : 해당 학교에서 **자퇴 처리(※특수교육대상자는 면제)**

나. 귀국 시 학적처리

1) **귀국학생**

- 일반고 :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 허용 인원에 포함시켜 해당 학년 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재취)학 허용, 정원 외에는 결원이 없으나 정원 내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도 일반 귀국학생의 편입(재취)학을 허용함
-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칙에 의해서 학교장이 시행함

2) **특례대상자**

- 해당 학년 **정원에 관계없이** 특례 귀국학생의 편입(재취)학을 허용함

다. 귀국 시 편입(재취)학 안내

1) 자퇴 당시의 학년으로 다니던 학교에 재입(재취)학할 경우
   - 자퇴일 이전까지 원적교에 직접 방문 상담 후 해당 학교에 재입(재취)학 신청
     * 별도의 유학 관련 제출서류는 필요하지 않음
2) 자퇴 당시의 학년으로 다른 학교에 편입(재취)학 할 경우
   - 유학 관련 제출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근거리 학교에 상담 후 편입(재취)학을 신청
   - 전 가족이 해당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필요
3) 자퇴 당시의 상급 학년으로 편입(재취)학 할 경우
   - 유학 관련 제출서류를 갖추어 원적교 또는 거주지 근거리 학교에 상담 후 편입학 신청

※ 유의 사항

1. 상급 학년으로 편입(재취)학 시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자퇴(유예)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 상황이 유지**됨을 안내하여야 함
2. 인정유학인 경우는 의무교육대상자라 하더라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학년을 배정할 수 있음
3. **학업중단자는 원칙적으로 원적교에 재입·편입(재취)학 하여야 한다(교육감전형 고등학교 포함)**

2. 특수교육대상자

가. 출국 시 학적 처리

재학중인 학교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이때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1/3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처리 후 정원 외 관리 처리

※ 학년말에 결석이 시작된 경우에는 유예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학년도 3월 1일임

학년말에 미인정 유학으로 미인정 결석중인 학생의 학적 처리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수료요건(교육과정 이수 또는 수업일수)을 갖춘 경우, 진급 또는 졸업으로 처리

○ 이때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1/3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예) 2023.12.16.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2학년의 미인정 유학시 학적처리

- 2023.12.16. ~ 2024.02.29.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급
- 2024.03.01. ~ 2024.05.31.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2024.06.01.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 학년말에 결석이 시작된 경우에는 유예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학년도 3월 1일임

나. 귀국 시 학적 처리

1) 정원 외 관리된 학생이 재취학을 원할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단,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와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은 불가능함**

2) 정원 외 관리(학업중단자 포함)된 **당해 학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없음 단, 학생이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또는 의무교육의 취지상)에서 재취학은 허용할 수 있으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은 불가**하며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 진급이 불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하기 때문에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 해야 함을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하며, 해당 학생은 **유급으로 처리함**

미인정 유학 학생(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적 처리

○ 2024.03.04. 미인정유학 학생의 학적처리 방법

→ 2024.03.04. ~ 2024.05.30.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2024.05.31.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 이 학생이 2024. 07월 중에 재취학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에는 재취학은 불가하나, 학부모가 재취학을 희망하면 학년말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가 되지 않음을 안내한 후** 재취학 가능(**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도 실시하지 못함)

→ 해당 학생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년말에 유급 처리

3. 편입(재취)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

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인증이 필요함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학력인정학교(교육부(http://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해당 학교목록 게시)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재취)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

※ 교육부 누리집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나. 성적증명서

다.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마.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바. 기타 제출 서류(88~89쪽 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4. 학년 배정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편입(재취)학 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편입(재취)학 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Ⅴ 한국학교 전출·입 처리

1. 개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이하 한국학교)에서 귀국한 학생들의 전출·입 처리**

* 한국학교(【참고 5】 한국학교 명단 참조)

2. 한국학교

가.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의 경우 국내학교 전출·입 방법과 동일

나.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 절차

▸ **【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시 】**

① 한국학교에서 전출 동의 요청 공문을 확인함

②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전출관리]-[학적반영](중)/[전출학적반영](고)의 [전출생 추가등록]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처리를 함

③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 공문을 팩스로 전송하고, 공문 원본과 전학 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한국학교장에게 제출함

학부모	한국학교	재적 학교장	재적 학교장	학부모
전학 신청 ➡	한국학교장은 재적교로 전출 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 ➡	재적교의 장은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 공문을 팩스로 전송 ➡	재적교의 장은 공문 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	학부모는 밀봉된 서류를 한국학교장에게 제출

▸ **【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

①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입 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함

②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함

③ 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재학증명서 등)를 참고하여 이전학년도 학생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 자료입력]에서 입력함

학부모	한국학교	학부모
전학 신청	한국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의 서류를 학부모에게 발급 ※ 발급 시 학교장 직인 필히 날인	학부모는 귀국 후 전입할 학교에 한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

※ 한국학교에서는 전학서류 발급 시 한국학교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학부모는 귀국 후 한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함

※ 교육부 인가 한국학교([참고 5] 참조)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할 경우 국내학교에서의 전학처리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외국 소재 타 학교에서의 편입(재취)학 처리와 구별해야 함

※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 한국학교의 성적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교과목 성적을 직접 입력함

3. 제주 국제학교

국내학교에서 제주국제학교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출 처리하고,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학으로 처리함

※ 제주국제학교 : KIS-Jeju(한국국제학교), NLCS Jeju(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BHA(Branksome Hall Asia), SJA Jeju(Saint Johnsbury Academy Jeju)

※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국제학교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4.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국내학교에서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면제(특수교육대상자)·자퇴 처리하고,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재취학(특수교육대상자)·편입학으로 처리함

※ 초·중등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해당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가 있으며, 학력인정 외국인 학교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음

Ⅵ 편입(재취)학 절차 안내

1. 편입(재취)학 신청

가. 편입(재취)학 서류 접수: 편입학 허용 여부를 해당 학교와 직접 상담하여 **신청**

나. 편입(재취)학 신청 절차

학 생	⇒	학 교	⇒	교육정보시스템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편입(재취)학 신청		서류 심사 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학년별 허용 범위 내에서 편입(재취)학 허용		편입학(재취학) 등록

1) 신청 : 학기 중에 귀국(입국)하였을 때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함(단, 해당 학기를 이미 이수하고, 편입(재취)학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됨)
※ 3. 편입(재취)학 시 유의사항 참고(91쪽)

2) 학교 : 서류 심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등을 거쳐 편입(재취)학 학년을 결정하고 허용 범위 내에서 편입(재취)학 허용(미인정 유학자인 경우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반드시 실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방법과 내용은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과 내용은 해당학교의 규칙에 따라 실시함
   예시)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에 대하여 지필평가
   - 학교 상황에 따라 지필평가 과목 변경 및 과목 수 가감 가능
   - 교과에 대한 면접 평가
   -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을 포함하거나 전문교과 과목으로 대체 가능

2. 지필평가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해당학교 정기고사에 준한다.

2. 제출 서류

가. 유형별 제출서류

해당자별 / 제출서류	특례 편입학(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을 준용)					일 반 편입학 (재취학)	비 고
	외국에서초.중학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o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및 확인서 제출 o 누리집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 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인증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o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및 확인서 제출 o 누리집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 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인증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면제,정원 외,졸업) 증명서		○	○			○	최종재학년월일 및 최종재학 학년 명시
국내최종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출력물		(○)	(○)			(○)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부,모, 학생)	자비유학자는 학생만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관할 행복복지센터)
제적등본					○		순수외국인은 제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	○	○	○	(○) 부모중 1인이 한국인인 경우	○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해당자별 / 제출서류	특례 편입학(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을 준용)					일 반 편입학 (재취학)	비 고
	외국에서초.중학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 국내거주사실증명 ◦ 영주권(시민권)사본 ◦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셋 중 하나)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부,모,학생)					외국 체류기간 명시 (재외공관장, 외교부 영사 서비스과)
유치과학기술자, 교수 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교육부의 유치초청 위탁기관)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체류국 해외공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기타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령제19조,75조 참조)					○ (부,모,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 행정 시·군·구청)
학력확인서				○			(해당 행정 시·군·구청)
[21]**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부양의무자중 **1인**과 출국시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	(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	○		○	○	(해당 행정 시·군·구청)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3국 수학인정서: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 해외공관에서 발행

21) 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참고 3】참조

※ 외교부의 협조요청으로 재외 교육기관 중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인 경우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나 미가입국인 경우는 영사관의 정규학교 확인 필요(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참조)

※ 단,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라 하더라도 해당국의 홍보가 미흡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사 인증으로 대체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다문화가정 학생 취학, 편입학을 위한 최소서류

- ▸ 취학(편입학) 신청서
- ▸ 학력증빙서류(성적증명서, 재학(졸업)증명서 등)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주(거소)사실증명서 중 택1

※ 학적 생성 시 가족사항 입력을 위해 추후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학교로 제출

▣ 제출 서류 발행처 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등 필요)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등 필요)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체류국 재외공관장
-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02)2002-0251~2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등 필요)

3. 편입(재취)학 시 유의사항

가.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재취)학을 하도록 권장하는 이유는 수업일수(수학기간) 미달로 인한 학년 배정 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권장사항이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임(단, 외국에서 **해당학기를 수료한 경우**에는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이란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

2024.07.18.까지 국내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1학기 재학 (예시)

- 2024.09.01 ~ 2024.06.19. **10학년 수료**
- 2024.06.30. 귀국
- 2024.09.01. 편입학 신청

※ 이 경우 해당학기를 수료하였으므로 귀국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하였더라도 편입학 가능

나. 외국에서 해당 학기를 수료하고 편입(재취)학한 학생의 경우, 편입(재취)학한 학교의 학칙에 따라야 하나 외국 학교에서 성적을 취득한 학생의 정기고사 응시여부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특히 기말고사를 면제한 경우는 해당학생의 당해 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성적)은 공란으로 처리됨을 학부모 및 학생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 특례 귀국학생은 해당 학년 정원에 관계없이 편입(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라. 학생들의 거주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귀국학생에게 편입(재취)학을 허용하고, 주소지가 일반 학생의 배정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학생이 편입(재취)학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 학교로 편입(재취)학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단, 거주지 학군내의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학교군 내 학교에 편입(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음).

Ⅶ 학력 인정 기준 및 학년 배정

1. 외국의 교육과정 인정 기준

가. 외국학교 인정 범위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2)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나.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다.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2. 편입(재취)학 학생의 학년 배정

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사실증명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상의 **교육과정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재취)학 학년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재학 기간(학기 단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학년을 배정

나.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재취)학 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재취)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예] **2022.07.19.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 2022.09.01. ~ 2023.06.20. **8학년 수료**
- 2023.09.01. ~ 2024.06.20. **9학년 수료**
- 2024.07.01. 국내 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 가능

⇒ 학제 차이로 인하여 **중2를 중복(8학년)**하여 중3을 수료하였으나, 총 재학기간을 계산 하면 고 1에 해당 되므로 고 1에 배정

[예] **2022.07.19.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 2022.09.01. ~ 2023.06.20.(7,8월 방학) **9학년 수료**
- 2023.09.01. ~ 2024.06.20. **10학년 수료**
- 2024.07.01. 국내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 차이로 **8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 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10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
  ⇒ 국내 재학기간 7년 6개월(7.5학년) + 국외교육기관 재학기간 2년(2학년) = 9년 6개월(9.5학년)
  ⇒ 귀국 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학 가능

다.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 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이 산출되었고 상급학년으로 진급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라. 거주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대학입학 자격이 됨(단, 해당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여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세부사항 부록2 참조)

[예] **2022.05.20.까지 국내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1학기 재학**

- 2022.06.01. ~ 2023.03.20. **10학년 수료**
- 2023.06.01. ~ 2024.03.18. **11학년 수료**(필리핀에서 고등학교 졸업)
- 2024.05.01. 국내 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하여 국내고등학교를 졸업하여야 대학입학 자격이 주어짐

마. **미인정 유학자(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주의 : 제29조 2항은 장기간의 질병 등으로 의무교육을 유예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학교에 다시 다니고자 할 경우, 재취학자의 학교 적응을 고려하여 일정한 평가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학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자는 이미 학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적용이 불가**함

3. 북한 이탈 학생의 학년 배정

가.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및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의 장(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 심의한 학력인정 및 학력결정에 따라 편입학처리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함

나. 북한 이탈 학생의 편입학 학년 배정은 **북한에서 수학한 기간**에 따라 **학력**을 **인정**함

1) 국내의 초·중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학교(4년제)와 고등중학교(6년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인정

2) 북한의 고등중학교 3학년(1975년 이전 고등중학교 2학년 포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 중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며, 북한의 고등중학교 6학년(1975년 이전 북한의 고등중학교 5학년 포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의 고등학교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

3)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인정 및 학력결정 사항에 따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

다. 학년결정은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라. 북한 이탈 학생의 경우 이탈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서류 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적응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 가능함(단, 재학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 특례 입학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

>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년결정'**에 따라 **탈북학생이** 취학 및 편입학하는 경우는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난민인정자 편입학

난민인정자와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며, 초·중·고등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음

5. 다문화학생(외국인) 편입학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1989.11.20.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은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본 협약은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에서 다문화학생(외국인)의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므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외국 국적의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음

가. 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학력증빙서류에 근거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외국이수 학력인정 원칙>	1. 6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수료: 초등학교 졸업인정 2. 9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수료: 중학교 졸업인정 3. 12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수료: 고등학교 졸업인정

나.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심의를 통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충청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실시함. 단, 학생의 학력과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낮은 학년에 배치하더라도 학급 내 적응을 위해 가급적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함.

6.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유의 사항

가. **인정 유학자인 경우는** 국내 재학 기간과 국외 정규 학교 재학기간을 합산(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학년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편입(재취)학 관련 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편입학 등)

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나. **<u>미인정 유학자인 경우</u>**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u>교과목별이수 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야 함</u>**

다. 해당 학기를 이수하지 못해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가 발생한 경우** <u>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u>

라. 귀국 전 **재적교 재학일로부터 편입(재취)학 신청일까지**의 학업공백이 출석일수의 1/3 이상인 귀국학생은 학년 배정 시 출석일수 2/3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에는 편입(재취)학이 불가하며, 학부모의 요청으로 편입(재취)학하더라도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학년말에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편입(재취)학 허용함

[예] **2023.07.18.까지 국내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1학기 재학**

- 2023.09.01. ~ 2024.06.20. **10학년 수료**
- 2024.06.30. 귀국하여 고 2로 편입학 신청

※ 연간 수업일수의 1/2 이상을 초과하였으나 해당학기를 수료한 상태이므로 편입학을 허락하고 출석일수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산정하여 다른 학생과 출석일수가 다를 수 있음

마. 대입 특례대상자의 경우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거나(11년 6개월 미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편입(재취)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 입학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Ⅷ 특례 편입학

1. 대상자(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을 준용)

<table>
<tr><th>구 분</th><th>자 격 요 건</th></tr>
<tr><td>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제1호)</td><td>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td></tr>
<tr><td>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
(제2호가목)</td><td>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table>
<tr><th>구 분</th><th>거주 기간</th><th>실체류 기간</th><th>재학 기간</th><th>비 고</th></tr>
<tr><td>부 모</td><td>2년 이상</td><td>1년 이상</td><td>-</td><td>거주 기간 내의 실체류 기간</td></tr>
<tr><td>자 녀</td><td>2년 이상</td><td>-</td><td>2년 이상</td><td>거주 기간과 재학 기간 동시 적용</td></tr>
</table>
※ 외국 학교에의 입학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td></tr>
<tr><td>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td><td>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td></tr>
<tr><td>외국인학생
(제2호다목)</td><td>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td></tr>
<tr><td>북한이탈주민
(제3호)</td><td>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td></tr>
</table>

※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2. 기간 산정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거주 기간	o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최초 입국일**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체류기간	o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 기간	o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o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 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결정 o 기간의 계산은 역년(Calenda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 편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 **대입특례 자격은** 대학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02) 1600-1615(대입상담센터) 누리집 : https://www.kcue.or.kr

【참고 1】

상담 사례 Q&A

Q_01 국내에서 2022년 12월까지 중1(7학년)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어학연수**를 한 후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8학년과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학년 초**에 온 경우, 몇 학년으로 재취학 할 수 있는가?

국내에서 7학년 2학기 재학하다 어학연수 후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온 경우

- 2022.12월 **7학년 2학기** 국내 재학**(7년)**
- 2023.01.~2023.08. **어학연수**
- 2023.09.~2024.12. **8학년, 9학년 1학기(1년6개월)** 재학중 몇 학년으로 재취학 할 수 있는지?

⇒ 총 기간 합산하면 **8년 6개월,** 국내 학제로 환산할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재취학 가능

⇒ 귀국 시기가 **학년 초**에 해당하므로 3학년1학기로 재취학하여 1학기 중복 이수

※ **어학연수 기간**은 수학기간으로 **불인정**

Q_02 국내에서 10학년(고1) 1학기를 마치고 외국에 나가 11(고2)학년을 다니다 귀국한 일반 귀국학생이 국내 10학년(고1)으로 내려 편입학이 가능한가?

외국에서 수학하던 학년 이하로 편입학이 가능한지?

- 2023.07. **10학년 1학기 수료**
- 2023.09.~2024.07. **11학년 재학중 귀국**

⇒ **고2에 편입**학 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의 수학기간을 인정받지 않고 **고1로 재입학 및 편입학 가능**

⇒ 귀국학생 편입학 서류를 갖추지 않고 재입학이나 일반편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 **학업중단일 (2024.07.) 이전 신청** 가능함

Q_03 상사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하였으며, 2022년 8월중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 해 9월 미국의 정규학교에 9학년 1학기로 편입하여 2024년 12월 **11학년 1학기** 끝내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대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현재 대학 입학에서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 등은 **대학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고등학교과정을 1년 포함하여 2년 이상(일부대학의 경우 3년 이상)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입 특례의 경우, 대학마다 지침**이 다르므로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_0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요건 충족이 된 이후 부모(또는 부모 중 1인)의 조기귀국에도 불구하고 특례 편입학 대상자가 되는가?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2년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하는 자는 특례 편입학 대상자에 해당됨. 요건 충족이 된 이후 부모(또는 부모 중 1인)가 조기귀국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부모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아 **미인정 유학자**이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결정함

Q_05 외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까지 2년 이상 학교에 다닌 후 귀국**하여 중 1에 배정받을 경우 **고입 특례대상**이 되는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참고 바람.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충남교육청 누리집-학생-고입전형-공지사항에 탑재(6월 예정)되어 있으니 확인 할 수 있음

Q_06 필리핀이나 러시아에서 11학년제 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대학에 갈 수 있는가?

거주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대학입학 자격**이 됨(단, **해당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여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세부사항 부록 [참고2]** 참조)

Q_07 고등학교 입학 전형과 대학진학 시 **귀국학생의 내신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특례대상자는 내신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반 귀국 학생**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 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합니다. 단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함

Q_08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조1항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6월 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6월 이상의 기간"의 계산은 역월(Calendar month)이 원칙으로, **재학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수학기간을 의미함.** 다만, 유학기간의 계산은 역월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교장이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함

Q_09 **2015년 3월부터 외국에서 거주하고** 9월부터 1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서 그해 9월에 1-1학기부터 시작하여 9-1학기를 모두 이수한 뒤 귀국한 학생이 2024년 3월에 국내 학교에 편입학 시 10-1학기로 편입학이 가능한가?

초등학교 입학전부터 외국에서 거주하다 9월 1학기 시작하는 학교에서 수학하고 귀국 후 학년 문의

- 2015.09~2023.12 **9학년 1학기** 이수**(총 수학기간 8년 6개월)**

⇒ **1학기가 부족하나 10학년 1학기**로 **편입 가능**

⇒ 단, 학기 부족으로 인하여 **상급학교 진학(대학 특례입학 등)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함**

Q_10 인정유학 범위 확대 개선【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3133(2012.06.11.), 2012.06.12. **출국자**부터 적용)과 관련하여 특례입학 처리 규정과의 관계는?

특례입학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 받으므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정유학 범위 확대 개선과는 **무관함**

Q_11 인정유학 범위 확대 적용 시기가 2012.06.12.부터 적용 되는데 출국 시점인지 귀국 시점인지?

인정유학 범위 확대 적용 시기는 출국 시점임

Q_12 2012.06.12. 적용 전 기존 출국자의 학적처리는?

2015학년도 중·고교 입학전형부터 『2012.06.12. 이전 출국한 부친 또는 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동반한 "정당한 해외출국" 학생』이 진학 희망학교에 서류 제출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부는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되, 위 "정당한 해외출국"관련 증빙서류(출입국 증명원, 파견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 감점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여기서 "정당한 해외출국"의 범위는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에 한함

Q_13 공무원의 휴직의 경우,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가?

불가피하게 출국할 경우(유학휴직, 고용휴직 등) 인사발령통지 공문에 따라, 인정 가능함

Q_14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이 한국학교로의 편입학이 가능한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서 해당 외국인학교가 본국의 **학력인정 학교임을 증명**하는 자국 정부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로의 편입학이 가능함

Q_15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이 한국학교로의 편입학 시 학력인정 공문서 확인 방법은?

외국인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 등 학교장 발급서류(영문이 아닐 경우 번역 공증)**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학교가 본국의 **학력인정 학교임을 증명하는 자국 정부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의 증명**서류가 필요함
이때, 해당 외국인학교가 대한민국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학교**(https://www.isi.go.kr)인지 확인이 필요함

Q_16 1년 **3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의 **학습기간 이수인정 방법**은?

1년 단위의 **3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1학기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Q_17 외국국적 학생이 학년을 배정받아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부모가 학년 재배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재학 중 학년을 재배정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최초 학년 배정 시 유의해야 함. 다만, 조기진급으로 상위학년으로 진급은 가능하지만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능력에 관한 사항, 국내외 경시 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등 시·도교육청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상위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함

Q_18 외국국적 학생이 3일 이상 질병결석을 하였으나 병원비 문제로(의료보험 미가입) 병원에 가지 않아 병원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출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담임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고, 결석계에 관련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거 서류로 보관함

Q_19 이혼한 결혼이주여성과 자녀가 함께 가출을 하여 미인정결석을 하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나이스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결은 교육과정과 미인정결석 처리를 하고 '사유'란에 해당 사유를 입력함.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연계하여 모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과 교육적 방임에 대한 부모 교육을 안내하며, 학생에 대해서는 아동보호기관 등을 통해 부모의 방임 또는 학대가 있는지 확인 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Q_20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학기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본국의 성적 등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기간 동안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한국에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사항이 아님. 따라서 취학 또는 편입학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공란이 됨.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의 학교급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음

Q_21 외국국적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외국국적의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증빙서류(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정정하면 됨

- 본인 성명 수정: 학생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증빙으로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한정정
- 본인 성명 이외의 수정사항이 1학년에서 발생: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직접 수정
- 본인 성명 이외의 수정사항이 2·3학년에서 발생: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한 정정

【참고 2】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교육부 학교정책과, 2015.2.2>

□ 외국의 교육과정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교육과정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사이버학습 등)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등 학습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취학 / 외국 국적자: 편입학)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취학, 외국 국적자: 편입학)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교육과정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기타

○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

【참고 3】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 관　　련 :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08.22)

□ 추진배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 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음 이에 교육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간소화 내용

현 행	개 선
o 재외공관 영사 확인 o 아포스티유 확인	o **외국학력인정학교(붙임 1 참조)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매년 확대 예정)하고 **확인서(붙임 2)를 징구**함 ※ 단, 누리집 미 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유의사항: 향후 개선된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니,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편입학이 취소됨을 귀국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

< 붙임 1 >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 붙임 2 >　확인서

< 붙임 1>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2024.. 2. 2.

지역권	학력인정학교 목록 요청 국가명 ※ ( )은 주 또는 도시명
아시아권 (30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UAE, 인도, 캄보디아, 몽골, 요르단, 스리랑카, 브루나이, 캄보디아, 튀르키예, 오만, 이스라엘, 카타르, 파키스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유럽권 (35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체코,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스위스, 몰타, 핀란드, 슬로베니아,노르웨이, 그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모로코, 우크라이나, 몰도바,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포르투갈, 벨라루스, 라트비아
북중미권 (5개국)	미국, 캐나다,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남미권 (9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칠레, 니카라과
오세아니아 (6개국)	뉴질랜드, 호주, 파프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피지
아프리카 (21개국)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르완다공화국, 에스와티니, 보츠와나, 모리셔스, 레소토, 가나, 토고,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마다그카르, 에피오티아, 카메룬, 알제리, 수단, 자메이카, 세네갈, 감비아

※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2024.2.2.기준이며, 수시 변동되므로 교육부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

※ 국가별 학력인정학교 세부 목록 : 교육부 누리집 (정책->초·중·고 교육)에서 확인
-> 목록명 :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목록 안내』

< 붙임 2 >

확 인 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 연락처 :

위 학생의 귀국학생 편입(재취)학 학적 서류는 외국학교의 재적 학교장이 발급한 학적 서류임을 확인 하며, 만약 위·변조 서류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편입학 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서명)

( )학교장 귀하

【참고 4】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에 따른 해외 이주 및 귀국학생 전·편입학

❑ 아포스티유 협약

❍ 우리나라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이 정식 발효(2007.07.14.)

❑ 아포스티유 확인서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로써 **협약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 사용**

○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①)
3. acting in the capacity of (②)
4. bears the seal/stamp of (③)

Certified

5. at (④) 6. (⑤)
7. by (⑥)
8. No (⑦)
9. Seal/stamp (⑧) 10. Signature (⑨)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 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 **APOSTILLE 확인서 발급전·발급후**

○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 공증문서: 정부기관 발행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 협약체결 효과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후 외교.영사기관이 해당 공문서(공증문서 포함) 서명자의 자격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복잡한 확인 대신, 외교부(해당국 담당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음으로써 수속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 아포스티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문서에 대한 협약 가입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민과 기업인의 국제 활동이 편리해짐

○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유통됨.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경우 공문서가 제출·사용되는 다른 협약 가입국 외교기관의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문서의 공신력을 인정받게 됨

❑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및 발급 방법

○ 출국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 편입학 할 때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국민외교타운 6층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 상담전화: (02) 2002-0251~2,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02) 720-8027
- 아포스티유 협약 관련 자료: **https://www.0404.go.kr** 「영사서비스/비자-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확인제도 참조
- 공문서발급(번역문 첨부,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 외교부 확인 (Apostille부착) ⇒ 해당국가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외국에서 귀국하여 국내학교로 편입학 할 때

- 공문서 발급(번역문 첨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Apostille부착) ⇒국내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절차 비교

현행 절차	아포스티유 발효 이후 절차
공문서 발급 ⇒ 우리 정부 확인(필요시) ⇒ 주한공관 확인 ⇒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 인정	**공문서 발급 ⇒ 외교부 확인 ⇒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 인정**

❑ 행정 사항

제출서류 심사 시 참고 사항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반드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단, 종전의 방법(**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함 •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종전처럼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https://www.0404.go.kr 에서 확인

【참고 5】

한국학교 현황

(2024. 3월 기준)

국가	관할공관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나이스 사용 여부
일본	주일본 대사관	동경 한국학교	〒162-0056 東京都 新宿區 若松町 2-1 東京韓國學校	81-3-3358-6061	81-3-3357-2236	사 용 (초등)
	주오사카 총영사관	교토 국제학교	〒605-0978 京都市 東山區 今態野 本多山町1 京都國際中·高等學校	81-75-525-3535	81-75-525-3563	미사용
		오사카 금강학교	〒559-0034 大阪市 住之江區 南港北 2-6-10	81-6-4703-1780	81-6-4703-1766	미사용
		건국 한국학교	〒558-0032 大阪市 住吉區 遠里小野 2-3-13	81-6-6691-1231	81-6-6606-4808	미사용
중국	주중국 대사관	북경한국 국제학교	100-102 中國 北京市 朝陽區 望京北路 37号 北京韓國國際學校	86-10-6470-6670	86-10-6470-6671	사 용
		천진한국 국제학교	300-381 中國 天津市 西青区 李七庄街 杨楼村 雅乐道与 瑶环路 交口 天津韓國國際學校	86-22-8829-7330	86-22-8829-7329	사 용
	주상하이 총영사관	상해 한국학교	201-107 中國 上海市 閔行區 華漕鎭 聯友路 355號	86-21-6493-9500	86-21-6493-9600	사 용
		무석 한국학교	214-028 中國 江蘇省 无錫市 新吴区 行创四路 102号	86-510-8548-9337	86-510-8548-9338	사 용
		소주 한국학교	215-200 中國 江苏省 苏州市 吴江区 太湖新城 秋枫街 299号	86-512-6833-6525	86-512-6833-6526	사 용
	주칭다오 총영사관	옌타이 한국국제 학교	264-003 中国 山东省 烟台市 莱山区 凤凰北路 1001号	86-535-210-2300	86-535-210-2305	사 용
		칭다오청운 한국학교	266-108 中国 山东省 青岛市 城阳区 長城南路 3号	86-532-6696-8696	86-532-6696-8680	사 용
		웨이하이 한국학교	264-200 42-2, Jiangsu E Rd, Huancui qu, Weihai Shi, Shandong Sheng, China	86-631-558-0170	-	사 용
	주선양 총영사관	대련한국 국제학교	116-600 中國 遼寧省 大連市 開發區 振鹏工业区73号	86-411-8753-6031	-	사 용
		선양한국 국제학교	110-168 中国 辽宁省 沈阳市 渾南新区 南屏東路 10甲号	86-24-3139-3029	-	사 용
		연변한국 국제학교	133-000 中國 吉林省 延吉市 朝陽街 2728A 邊韓國國際學校	86-433-291-2745	86-433-291-2733	사 용
	주광저우 총영사관	광저우 한국학교	511-447 中國 广州市 番禺区 石楼镇 兴海路 6号 广州韩国学校	86-20-3929-8661	86-20-3929-8663	사 용
	주홍콩 총영사관	홍콩한국 국제학교	Korean International School 55, Lei King Road, Sai Wan Ho, Hong Kong	852-2569-5500	852-2560-5699	사 용

국가	관할공관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나이스 사용 여부
대만	주타이베이 대표부	타이뻬이 한국학교	10876 臺灣 臺北市 靑年路 68巷 1號 臺北韓國學校	886-2-2303-9126	886-2-2309-7780	사 용
		까오숑한국 국제학교	臺灣 高雄市 鼓山區 鼓山二路 37巷 81弄 43-2號 高雄韓國學校	886-7-521-7751	886-7-521-7752	미사용
싱가포르	주싱가포르 대사관	싱가포르 한국국제 학교	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71 Bukit Tingi Road, Singapore 289759	65-6741-0778	65-6467-1259	사 용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자카르타 한국국제 학교	JL. Bina Marga No. 24 Kel Ceger, Jakarta, Indonesia	62-21-844-4958	62-21-844 -4927	사 용
베트남	주호치민 총영사관	호치민시 한국국제 학교	Korean School Site A, Saigon South, Tan Phu Ward, Dist. 7, Ho Chi Minh City, Vietnam	84-28-5417-9021	84-8-5417-9028	사 용
	주베트남 대사관	하노이한국 국제학교	Tran Vy street, Mai Dich, Cau Giay, Hanoi, Vietnam	070-7751-3422	-	사 용
태국	주태국 대사관	방콕한국 국제학교	10220 14/107 Ram Intra Soi 13 Yaek 4, Bang Khen, Bangkok, Thailand	66-2-121-7760	-	사 용
이란	주이란 대사관	테헤란 한국학교	Korean School in Tehran No.16, 4th St., Bucharest Ave., Tehran, Iran	98-21-8873-4910	98-21-8873-8699	미사용
사우디 아라비아	주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	젯다 한국학교	Korean School in Jeddah P.O.BOX 4322, Jeddah 21491, Kingdom of Saudi Arabia	966-12-667-3704	966-12-667-1190	미사용
		리야드 한국학교	Korean School in Riyadh P.O.BOX 88824, Riyadh 11672, Kingdom of Saudi Arabia	966-11-248-0612	-	미사용
이집트	주이집트 대사관	카이로 한국학교	Korean School in Cairo Road 48, 1st Zone, 6th City, New Cairo, Egypt	20-2-2565-6428	20-2-2565-6430	사 용
파라과이	주파라과이 대사관	파라과이 한국학교	Colegio Coreano Paraguay Padre Cassanello Esq. Battilana Asuncion Paraguay	595-21-310-052	-	미사용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Korean School in Argentina Av. Asamblea 1840 Cap. Federal Buenos Aires, Argentina	54-11-4634-1588	54-11-4633-8508	미사용
러시아	주러시아 대사관	모스크바 한국학교	Moscow Korean School 8k3 Tolbukhina St. Moscow, Russia, 121596	7-495-787-0748	7-495-420-2377	미사용 (도입예정)
필리핀	주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한국국제 학교	6-A Upper mackinly Road Mackinley Hill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M. M, Philippine	63-2-403-3495	63-2-403-3496	사 용
말레이시아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말레이시아 한국학교	No 7&8, Jalan CV 2, Selangor Cyber Valley 63300 Cyberjaya, Selangor	070-4024-7300	-	사 용
캄보디아	주캄보디아 대사관	프놈펜한국 국제학교	#110, Russian Blvd., Sangkat Teuk Thla, Khan Sensok, Phnom Penh, Cambodia	855-023-901-500	-	미사용

※ 재외교육기관 포털(http://okeis.moe.go.kr)**에서 반드시 확인,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

※ 나이스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라도 학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6】

학력인정 대안학교 현황

1. 대안학교(각종학교) 51교(공립 22교, 사립 29교) (2024. 3월 기준)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구분	설립연도	소재지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구분	설립연도	소재지
서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고)	사립	'09	중구 신당동	강원	해밀학교(중)	공립	'18	홍천군 남면
	여명학교(고)	사립	'10	중구 남산동		노천초등학교(초)	공립	'19	홍천군 홍천읍
	지구촌학교(초)	사립	'12	구로 오류동	충북	글로벌선진학교(중·고 통합)	공립	'11	음성군 원남면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고)	공립	'12	종로 숭인동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고)	공립	'12	제천시 강제동
부산	송정중학교(중)	공립	'19	강서구 송정동		다다예술학교(초·중 통합)	공립	'17	청주시 상당구
	장대현중고등학교	사립	'23	강서구 신호동		은여울중학교(중)	공립	'17	진천군 문백면
대구	대구해올중고등학교(중·고 통합)	공립	'18	대구 달서구		은여울고등학교(고)	공립	'21	진천군 문백면
인천	인천청담학교(고)	사립	'11	연수 동춘동	충남	여해학교(중)	공립	'13	아산시 염치읍
	인천해밀학교(중·고 통합)	공립	'12	남동 구월동		드림학교(고)	공립	'18	천안시 동철로
	인천한누리학교(초·중·고 통합)	공립	'13	남동 논현동		충남다사랑학교(고)	공립	'19	아산시 둔포면
광주	월광기독학교(초)	사립	'14	서구 화정동	전남	월광기독학교(중)	공립	'18	함평군 대동면
대전	새소리음악고등학교(고)	사립	'12	서구 도마동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고)	공립	'18	강진군 강진읍
울산	새소리음악중학교(중)	사립	'17	서구 도마동		이음학교	공립	'20	광양시 광양읍
						송강고등학교	공립	'21	담양군 봉산면
	울산고운중학교	공립	'21	울주군 두서면	경북	한동글로벌학교(초·중·고 통합)	공립	'11	포항시 북구
경기	티엘비유글로벌학교(초·중통합)	사립	'08	고양시 덕양구		글로벌선진학교문경(중·고 통합)	공립	'13.	문경시 영순면
	화요일아침예술학교(고)	사립	'11	여천군 천곡읍		산자연중학교(중)	공립	'14	영천시 화북면
	쉐마기독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양주시 은현면		나무와중학교(중)	공립	'14	영천시 대창면
	새나래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용인시 (휴교중)		링컨중고등학교(중·고 통합)	공립	'17	김천시 대덕면
	경기새울학교(중)	공립	'13	이천시 율면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고)	공립	'18	경산시 자인면
	광성드림학교(초·중 통합)	사립	'14	고양시 일산구	경남	경남꿈키움중학교(중)	공립	'14	진주시 이반성면
	하늘꿈학교(중·고 통합)	사립	'16	성남시 수정구		지리산중학교(중)	공립	'14	하동군 (휴교중)
	중앙예닮학교(중·고 통합)	사립	'18	용인시 수지구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고)	공립	'17	고성군 하일면
	노비따스음악중고등학교(중·고 통합)	사립	'19	가평군 설악면		밀양영화고등학교(고)	공립	'17	밀양시 상남면
	군서미래국제학교	공립	'21	시흥시 정왕동		김해금곡고등학교(고)	공립	'20	김해시 한림면
						거창연극고등학교(고)	공립	'20	거창군 위천면
						남해보물섬고등학교(고)	공립	'21	남해군 창선면

2.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20교(공립 5교, 사립 15교) (2024. 3월 기준)

시도	학교명	설립 구분	설립 연도	소재지	시도	학교명	설립 구분	설립 연도	소재지
대구	한울안중학교	사립	'18	달성군	강원	팔렬중학교	사립	'11	홍천군
	가창중학교	사립	'18	달성군		가정중학교	공립	'17	춘천시
광주	평동중학교	공립	'14	광산구	전북	전북동화중학교	공립	'09	정읍시
	살레시오여자중학교	사립	'22	동구		지평선중학교	사립	'02	김제시
대전	동명중학교	사립	'23	대전시		용정중학교	사립	'03	보성군
경기	두레자연중학교	사립	'03	화성시	전남	성지송학중학교	사립	'02	영광군
	이우중학교	사립	'03	성남시		청람중학교	공립	'13	강진군
	헌산중학교	사립	'03	용인시		나산실용예술중학교	공립	'18	함평군
	중앙기독중학교	사립	'06	수원시	경남	남해성주중학교	사립	'15	남해군
	한겨레중학교	사립	'06	안성시		대병중학교	사립	'21	합천군

3.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 25교(공립 5교, 사립 20교) (2024. 3월 기준)

시도	학교명	설립 구분	설립 연도	소재지	시도	학교명	설립 구분	설립 연도	소재지
대구	달구벌고등학교	사립	'03	동구	전북	세인고등학교	사립	'99	완주군
인천	산마을고등학교	사립	'00	강화군		푸른꿈고등학교	사립	'99	무주군
광주	동명고등학교	사립	'99	광산구		지평선고등학교	사립	'09	김제시
경기	두레자연고등학교	사립	'99	화성시		고산고등학교	공립	'18	완주군
	경기대명고등학교	공립	'02	수원시	전남	영산성지고등학교	사립	'98	영광군
	이우고등학교	사립	'03	성남시		한빛고등학교	사립	'98	담양군
	한겨레고등학교	사립	'06	안성시		한울고등학교	공립	'12	곡성군
강원	전인고등학교	사립	'05	춘천시	경북	경주화랑고등학교	사립	'98	경주시
	팔렬고등학교	사립	'06	홍천군	경남	간디고등학교	사립	'98	신청군
	현천고등학교	공립	'14	횡성군		원경고등학교	사립	'98	합천군
충북	양업고등학교	사립	'98	창원군		지리산고등학교	사립	'04	신청군
충남	한마음고등학교	사립	'03	천안시		태봉고등학교	공립	'10	창원시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사립	'03	서천군					

【참고 7】

북한이탈학생 취학 및 편입학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013.09.09.), 2100-6523

❑ 취학 및 편입학 탈북학생의 수료기준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 결정에 관한 사항

○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초등학교, 중 · 고등학교』

<교육부 훈령 제7조(학적사항) '해설'>

귀국학생 등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참고】

외국의 학제

국 가 명	학제												총수학기 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년
한 국	1	2	3	4	5	6	1	2	3	1	2	3	12년
북 한	인민1	인민2	인민3	인민4	고등중1	고등중2	고등중3	고등중4	고등중5	고등중6			10년
미 국	1	2	3	4	5	6	7	8	고1 9	고2 10	고3 11	고4 12	12년
필 리 핀	1	2	3	4	5	6	중1	중2	중3	중4	고1	고2	12년
말레이시아	1	2	3	4	5	6	중등1	중등2	중등3	중등4	중등5		11년
브 라 질	1	2	3	4	중1	중2	중3	중4	고1	고2	고3		11년
러 시 아	1	2	3	4	5	6	7	8	9	10	11		11년
뉴질랜드	1	2	3	4	5	6	F1	F2	F3	F4	F5	F6.7	13년
호 주	1	2	3	4	5	6	중1	중2	중3	중4	고1	고2	12년

※ 나라(주)마다 약간의 학제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8】

외국 국적 학생의 학적 관리 요령

❑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 학적처리 방법

- 국내학생의 입학(신입학)과 동일하게 처리
- 사용되는 학적용어 : 입학
- 입학시기 : 1학년 1학기 시작일로부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2/3 이상 남은 시점

○ 나이스 처리 방법

- 국내 중학교에서 전송되어오는 자료가 없으므로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입학생 등록을 하여 학적을 생성한 후 [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추가 자료를 입력함.

❑ 학기 중에 들어온 경우

○ 학적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학기 중(입학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절차에 의해 입급하는 경우
- 사용되는 학적용어: 편입학
- 해당학교 학칙에 따라 편입학 학년 결정, 결원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음

○ 나이스 처리 방법

- 국내에 '편입학' 이전의 자료가 없으므로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편입학'으로 등록을 하여 학적을 생성한 후 [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추가 자료를 입력함. **'편입학' 이전 학년의 자료는 공란으로 둠**

❑ 초/중/고등학교 중단 후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온 경우

○ 학적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학교(하위 학교급 포함)에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온 경우
- 사용되는 학적용어: '재입학' 또는 '편입학'

○ 나이스 처리 방법

- 초/중 중단 후 고등학교 편입학 처리는 '학기 중에 들어온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고등학교 중단 후 고등학교 편입학(재입학) 처리는 일반 재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방법

1) 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학력증빙서류에 근거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2) 학력증명이 곤란한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 입교 절차

<table>
<tr><td rowspan="3">입교신청/
입교대상
확인</td><td colspan="2">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외국 국적 학생</td><td rowspan="3">국내출생자녀 등
한국국적 학생

[원칙]
국내 비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학적 처리/
귀국학생 학적
처리 방법 적용</td></tr>
<tr><td colspan="2">고등학교</td></tr>
<tr><td>1. 천안, 아산지역(교육감 전형): 교육과정과 중등 학적담당자
2. 기타 지역: 입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문의</td><td>확인서류</td><td>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td></tr>
<tr><td>서류확인</td><td colspan="3">- 입학 또는 편입학 원서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증빙 서류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대상 확인(외국 소재 정규 학교 확인)
▹ 학년결정에 필요한 서류 확인: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td></tr>
<tr><td rowspan="4">학년결정</td><td colspan="2">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td><td>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td></tr>
<tr><td rowspan="3">-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년 결정
- 외국학교 재학 기간과 이수 내용을 우리 나라 학제(12년)에 맞춰 계산</td><td colspan="2">학력심의</td></tr>
<tr><td>충남교육청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td><td>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교육감 지정)</td></tr>
<tr><td colspan="2">학력인정 및 학년결정</td></tr>
<tr><td>학적처리
(학교)</td><td colspan="3">- 학적 용어 결정 : 입학, 편입학, 재입학 등
- 입교를 위한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의 내부 결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적처리
▹ 학생 성명 : 여권(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등) 기준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시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3000000(남) 혹은 4000000(여))</td></tr>
</table>

※ 국내출생자녀 등 한국국적 학생, 한국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내 비다문화 학생과 동일하게 학적처리

❑ 제출 서류

1) 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서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1부

※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3) 학력 증빙 서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수학 기간을 증빙

4)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국내에서 이전 학교 재학한 적이 있을 경우 제출

5) 예방접종증명서: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 학력 증빙 서류 인정 방법

1) 교육부 누리집을 통한 확인: 교육부 누리집-[정책정보공표]-[초·중·고교육] 메뉴에서 확인함 [문서명: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력서류 간소화학교) 목록 안내]

※ 학력인정학교 목록에서 확인된 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의 입교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학력 증빙 서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효력을 인정함

※ 아포스티유 협약: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1965. 1. 24. 발표(우리나라는 2007. 7. 14. 발효)

※ 외교부 아포스티유(https://www.apostille.go.kr/) 메인화면→[발급 서비스 바로가기]→[서비스 안내]→[아포스티유 제도소개]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의 가입국 확인 가능

3) 영사 확인(Legalization): 서류 발행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가 해당 국가의 정규 학교가 발행한 문서임을 확인함.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 함

4) 민원인 직접 소명: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소재국의 관한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임을 소명하여야 함(소재국 관할교육청 누리집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제출 등)

5)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해당 학교장의 직인,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 **한글이나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공증이 된 번역문을 첨부해야함.**
※ 영문 또는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외국 공문서는 한국의 관계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문 또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소재국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편입학이 취소됨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 학생 제출 서류가 미인정 서류 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지정교 외 심의 권한이 없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해야함.**

❑ 학년 결정의 원칙

1) 학년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학기)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중복수료 제외)로 인한 수학기간이나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2) **학년결정은 학생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되, 본인이 낮은 학년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함.**

3)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입국 후 국내 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학년 배정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취학 또는 편입학 등 중도 입급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예: 9월에 1학년 신입학)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가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함.
-외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연속하여 취학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4)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

5)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6)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table>
<tr><td colspan="3">교육 연한</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tr>
<tr><td colspan="3">우리나라 학제로 환산</td><td colspan="6">초등학교과정</td><td colspan="3">중학교과정</td><td colspan="3">고등학교과정</td><td colspan="4">대학교과정</td></tr>
<tr><td rowspan="5">외국학제</td><td>12</td><td>5 - 3 - 4 - 4제</td><td colspan="5">5년</td><td colspan="3">3년*</td><td colspan="3">4년</td><td colspan="4">4년</td></tr>
<tr><td>13</td><td>6 - 4 - 3 - 3제</td><td colspan="6">6년</td><td colspan="4">4년</td><td colspan="3">3년</td><td colspan="2">3년</td></tr>
<tr><td>11</td><td>6 - 3 - 2 - 5제</td><td colspan="6">6년</td><td colspan="4">3년</td><td colspan="3">2년</td><td colspan="4">5년</td></tr>
<tr><td>13</td><td>2 - 4 - 3 - 4 - 3제</td><td colspan="2">2년</td><td colspan="4">4년</td><td colspan="4">3년</td><td colspan="5">4년</td><td colspan="2">3년</td></tr>
<tr><td>12</td><td>8 - 4 - 4제</td><td colspan="8">8년</td><td colspan="3">4년</td><td colspan="4">4년</td></tr>
</table>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취학(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함.

※ (예시) 베트남에서 초등학교(5년)와 이탈리아에서 중학교(이탈리아에서만 3년 수학)를 수료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 가능함.

[참고1] '다문화학생'법령상 용어와 정책 용어의 관계

※ 법령상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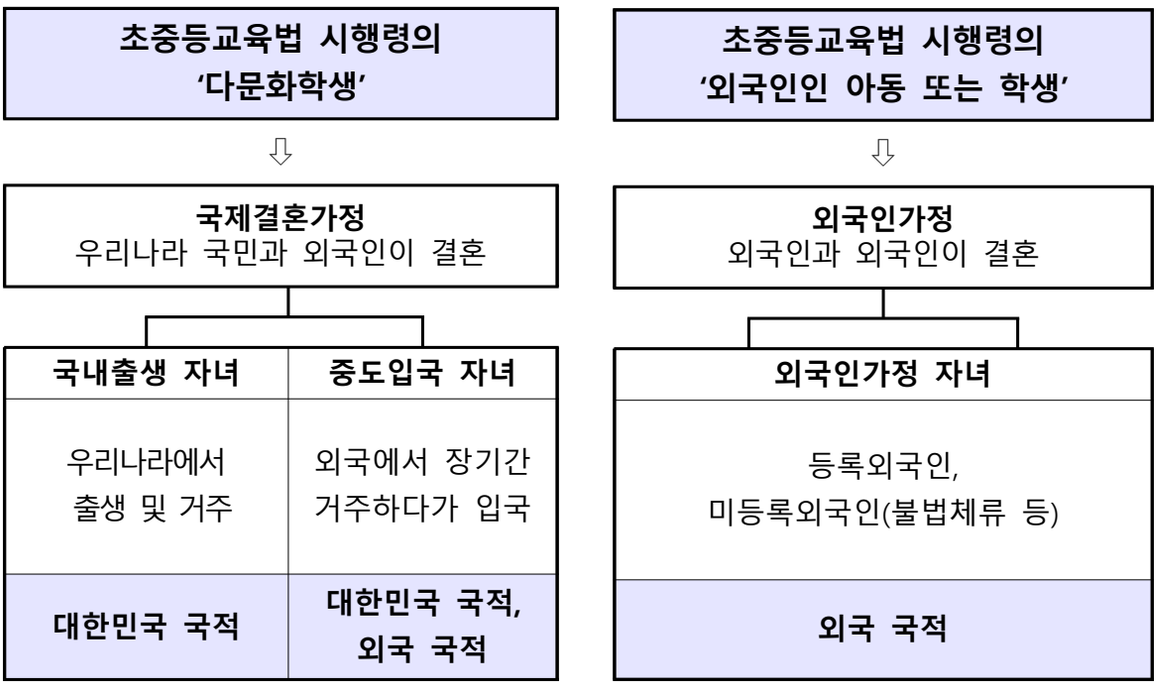

※ 정책 용어로서의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다문화학생'과 '외국인학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본 지침에서는 정책 용어를 따름

[참고2] 다문화학생의 유형(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및 정책 용어)

국제결혼 가정	**국내 출생 자녀**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중도 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외국인 가정	**외국인 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참고 3] 고등학교 진입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안내

다문화학생 고등학교 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및 경과

○ **초등학교**는 거주지에 따라 편입학 등 가능한 **학교가 지정**되며, **중학교**는 법령 개정('20.7월)을 통해 **교육장 배정 방식**으로 개선

○ **고등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학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한 입학 거부 사례 등 발생 우려

- 다문화학생의 **고등학교 진입**을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권을 보장하고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됨('22.3.22. 개정, '22.4.23. 시행)

□ 주요 내용

○ 미등록 아동 및 학교장 허가로 편입학 등이 어려운 다문화학생의 **고등학교 진입방식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 학교장 거부 등으로 **공교육 진입이 제한**되는 경우나 한국어교육 등 필수적인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학생의 학습권을 보호(제89조의2 제2항 신설)**

⇒ 다문화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 및 특정 학교 **편중 현상 완화 기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조문 >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은 제외한다)

②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서식1] 입학·편입학 신청서

입학·편입학 신청서

지원자(학생)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국내 최종 학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재학·수료·졸업)				

국외 학력	국 명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재 학 학 년	재 학 기 간	정규 학교 여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 )년	

보호자	성 명		보호자전화	

다음과 같이 귀교에 입학(편입학) 하고자 하니 제( )학년에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 ) 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편입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호자: (서명)**

[서식2]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신청서

<table>
<tr><th colspan="8">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신청서</th></tr>
<tr><td rowspan="3">신청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d rowspan="3">사진
(6개월 이내 촬영)</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보호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td>신청자와
의 관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신청내용</td><td>학력
인정</td><td colspan="2">(　　) 초등학교 졸업 인정
(　　) 중학교 졸업 인정
(　　) 기타 :</td><td>학년
결정</td><td colspan="2"></td></tr>
<tr><td>참고사항
(신청자
의견 등)</td><td colspan="7"></td></tr>
</table>

위와 같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붙임서류(예시)

1. 여권사본 1부 또는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 1부
3. 학력 증빙 관련 서류 1부(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충청남도교육청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부록3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Ⅰ 목적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Ⅱ 관련 근거

1.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4.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Ⅲ 기본 방침

1.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5.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6.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의 자격 부여 시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Ⅳ 용어의 정의

1. 조기진급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학교급 내에서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2. 조기졸업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학교급 내 2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할 수 있다.

3. 상급학교 조기입학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고등학교**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의 이수 단위 등을 고려한** 원점수의 합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단 과학고는 20% 이내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개인 순위로** 3등 이내 입상한 자**(동석차 인정)**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에 대한 지침

◈ 학교자체의 조기졸업 등을 목적으로 한 지능 검사 지양
◈ 공인된 상담(검사) 자격 소지자에 의해 서로 다른 표준화된 검사지로 실시한 **당해 학교급별** 입학 이후의 검사 결과만 인정
◈ 서로 다른 검사결과 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차 유지(지능검사지에 대한 학습 효과 방지)

Ⅵ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조기진급·조기졸업 신청 ➡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 조기진급·조기졸업평가 ➡ 조기진급·조기졸업

① **(조기진급·졸업신청)**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학교에 신청

-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② **(조기진급·조기졸업대상자 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을 가지고 희망자 중 평가대상자를 선정

-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함
- ○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③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 ○ 각급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
- ○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

④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조기졸업 인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에 관련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함

Ⅶ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각급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각급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고등학교**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과목(예: 국어1, 수학1, 영어1, 사회, 과학)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단 과학고는 40% 이내인 자
2.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Ⅷ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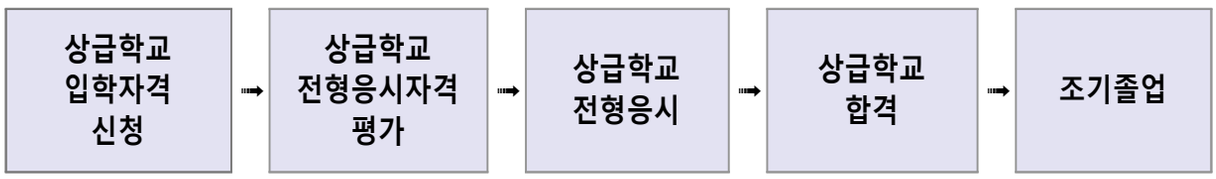

① **(상급학교입학자격신청)**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진학을 원하는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수시로 발생 가능

② **(상급학교전형응시자격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신청 후 수일 이내)

○ 각급 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③ **(상급학교전형응시)**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

④ **(상급학교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함

Ⅸ 조기진급 · 조기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 구성

-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역할

- ❍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위원이 위 내용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함

참고자료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551호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초·중등교육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초·중등교육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초·중등교육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제78조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4조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6.12.30.>

부칙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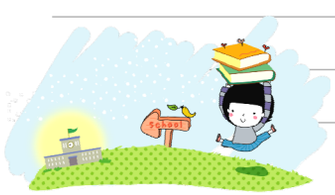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